

第一號

宗報

清州楊氏大宗會

刊行辭

중보 간행에 즈음하여

會長 澈愚

일가 여러분 그간 안녕하시고 가정마다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八六년 三월 一일 서울 경서중학교에서 우리 대종회 창립총회를 연지 어언간 三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동보를 무사히 간행하여 배포가 끝났으며 고문회를 조직하고 장학회받기인회를 만들어 그 기금을 조성하여 드디어 청주양씨대종회창간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一回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을 마쳤으며 각과 문중에서는 사우(祠宇)를 수리 또는 개축하는 등 봉선현양(奉先顯揚)사업을 서두르는 등 청주양군의 중흥의 기를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종회의 제一단계 마무리작업이 대충 끝나 우리 문중 상호간의 화친과 발전의 모체가 될 각종 정관 규정 및 임원록 예고편(禮考篇) 등 자료집을 수록한 종보 제一호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 양분이 앞으로 다른 문중 못지않게 친목하고 단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종약(宗約)을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률과 관행도 점차 복잡해지고 개체가 거듭되어 모든 파문중의 종재(宗財)관리에 많은 무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종회보로서의 그 준칙(準則)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통일준칙인 파종회정관을 八八년 九월 一八일 이사회에서의 결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종회 운영은 이 준칙에 의거하여 보다 전진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양씨는 그간 너무나 서로 소원되어 지내왔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많은 역경을 겪었음에 여유하겠지만 그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가간에 서로 서로 손을 맞잡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전작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조상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소홀하였고 무관심하였습니다. 인멸되어가고 있는 그 업적과 문헌들을 세상에 밝히는 일과, 사당 재실들을 보수 관리 또는 중건하는 일들을 각 파종회를 유위한 일가로 재조직하여 하나 하나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발족한 장학회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역사적인 임입니다. 장학회의 발전은 몇 사람의 독지가나 뜻만으로 안되는 것이 우리의 임입니다. 전국의 일가들이 상의를 갖고 십시일반(十是一飯)으로 그 기금을 회사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一구좌를 一만원, 二만원, 三만원, 五만원, 十만원 단위로 하여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전국 일가들로부터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재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배양하여 나라살림은 물론 우리 양문의 밝은 내일을 향도(嚮導)하는 새일꾼 복돋는데 우리들 기성세대가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가 여러분 역사와 가문을 빛내는 것은 올바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것은 또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예지와 윤기를 지닌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가 무엇인가 망설이다가 우선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대종회 사무실을 제공 편의를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물론 시골계시는 일가 여러분께서도 자주 대종회에 들르셔서 대화를 통하여 중지를 모아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찾고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宗 論

大回譜編纂餘錄

副會長 貞圭

大同譜編纂에 있어 史料에 의하여 修正, 削除, 擬定復元된 重要部分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밝히 든다.

一、溯源錄

章의 子 款苞를 款으로 修正.

章의 子는 款, 朗, 苞의 三兄弟이며 頤은 款의 子이다.

淸州楊氏溯源錄은 臺灣의 中央圖書館 所藏의 「楊氏大族譜」世系表와 一致함으로서 正確性이 立證되었다.

楊氏의 一世는 黃帝이다. 그리고 그 四十一世인 伯僑가 楊姓의 太始祖이며 五十一世가 章인데 章의 長子인 款의 直系後孫인 震은 六十世이며 그의 五子 牧, 里, 秉, 諤, 奉 中 三子 秉의 後孫이 起이다. (世系表 寫本 大宗會 保管)

二、忠憲公의 東來時日과 王代

忠憲公은 高麗 忠定王 三年 辛卯(一三五二)十二月二十四日 元에 머물어있던 恭愍王이 魯國大長公主와 같이 歸國할때 魯嬪都令으로 陪從 東來하였다. 그러므로 東來 王代 忠宣王을 忠定王으로 修正하였다. (高麗史, 三十八, 二, 八, 九行)

三、元의 官制와 品階

忠憲公在 元時 및 그 曾祖父와 父君이신 善才公과 仁保公의 稱號를 元의 官制대로 金紫光祿大夫 中書省 政丞으로 修正하였다. (元史, 八十五, 志第三十五, 百官)

四、大回譜 刊行 次順

一次 庚午譜는 宣祖庚午(一五七〇)刊으로 蓬萊公의 筆寫本이었으며 公의 宗孫 錦의 이 六, 二五動亂 때 遺失했다.

二次 庚午譜는 肅宗庚午(一六九〇)刊으로 憲爽公 主管의 木板本이며 太宗孫 熙敬, 傍孫 應澈이 所藏하고 있다. 따라서 刊行次順을

三次 丙戌譜, 四次 丁卯譜, 五次 庚戌譜, 六次 庚子譜, 七次 戊辰譜, 八次 丁酉譜, 九次 丁卯譜로 修正하였다.

五、削除 및 擬定文 復元

1、皇明御詩, 李資諒詩 削除, 李資諒은 高麗 肅宗朝人이다. (高麗史, 卷九十五, 十一, 列傳第八)

2、忠簡公 伯淵의 實記(序, 跋文, 孫錄)中 「太祖共擊阿只發徒云云」을 禮成江及 晉州班城縣倭敵으로 修正하였다.

公은 高麗 僖王五年 己未(一三七九)에 逝去하시고 雲峰大捷은 다음 해 同六年 庚申(一三八〇)이었다.

3、唐岳君 浦의 實記中 中朝(擬定)를 高麗朝로 復元하였다.

4、尚書公 東茂의 實記中 「與金方慶討珍島賊」(擬定)을 削除하였다.

以上 자세한 것은 「源流考」 參照 要望.



清州楊氏大宗會獎學會懸板式(1988, 11, 23)



第1回 獎學證書 및 獎學金授與式(1989, 2, 27)

目次

一、清州楊氏大宗會 定款	二
二、清州楊氏派宗會 定款	七
三、清州楊氏大宗會獎學會 定款	一二
四、清州楊氏大宗會獎學生選定 及 獎學金支給規程	一六
五、清州楊氏大宗會 顧問會則	一八
六、清州楊氏大宗會 任員錄	一九
七、清州楊氏大宗會顧問會員兼獎學會 設立委員錄	二一
八、清州楊氏大宗會獎學會 任員錄	二三
九、禮考篇	二四

清州楊氏大宗會 定款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清州楊氏大宗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支會 및 派宗會를 둘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崇祖道義精神을 宣揚하여 宗中相互間의 親善과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 1、先祖奉祀、墓域、祠宇、齋閣守護 및 宗財 保全에 관한 일
- 2、宗派 宗中間의 親睦에 관한 일
- 3、大同譜 刊行
- 4、先祖의 遺物、史蹟保存 및 그 顯揚에 관한 일
- 5、獎學 및 社會事業에 관한 일
- 6、其他 本會 目的 達成에 필요한 일

第二章 會 員

第五條 本會는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六條 本會의 正會員은 各派宗會 任員 또는 地域分派宗中代表 및 入會願書를 提出한 二十五歲以上の 宗人으로 하고 準會員은 一般宗人으로 한다.

第七條 本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權利가 있다.

- 1、總會에서의 發言權과 決議權
- 2、任員選舉 및 被選舉權
- 3、本會의 會務 및 財産에 관한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義務가 있다.

- 1、定款 및 諸規程 또는 總會 決議事項을 遵守할 義務
- 2、本會維持에 필요한 會費를 出捐할 義務

第三章 任 員

第九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會長 一人
- 2、副會長 五人
- 3、理事 五〇人以内
- 4、監事 二人
- 5、幹事 二人
- 6、事務員 若干名

第一〇條 本會 任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

- 1、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幹事 및 事務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第一一條 本會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各種會議의 議長이 된다.
-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但 會長이 副會長 一人을 常任으로 指名하여 會務를 監理토록 할 수 있다.
- 3、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의 主要案件을 議決하며 필요한 때는 會長이 常任理事를 들 수 있다.

4、會長 및 副會長은 當然職理事가 된다.

5、監事는 本會의 業務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며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二條 本會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2、任員中 缺員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서 이를 補充한다.

3、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三條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常任任員 및 幹事 事務員에게는 報酬 또는 手當을 支給한다.

第四章 會議

第四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 理事會 및 常任任員會로 한다.

第五條 總會는 正會員으로 構成한다. 但 形便에 따라 各派에서 選出한 代議員으로 代替할 수 있다.

代議員의 構成比率는 理事會에서 規定한다.

1、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定期總會는 每年 一次, 가을에 會長이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로 할 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六條 總會의 召集은 會議 七日前에 會長이 日時 場所 案件을 公示 또는 通知하여야 한다.

第七條 總會 理事會 常任任員會의 成立 및 議決은 다음에 의한다.

1、在籍人員 三分의 二以上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但 贊反 同數인 때는 議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第八條 總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定款改正

2、任員選出

3、事業計劃 및 豫決算에 관한 일

- 4、宗財管理 및 處分에 관한 일
- 5、理事會 常任任員會에서 附議된 事項
- 6、其他事項

第一九條

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三分의 一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며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 1、總會에서 委任된 일
- 2、理事會의 決議를 필요로 하는 일
- 3、諸規程의 制定 및 改正
- 4、其他事項

第二〇條

常任任員會는 會長이 隨時로 召集할 수 있으며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 1、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된 일
- 2、緊急을 要하는 일
- 3、其他事項

第五章 財 政

第二一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四月一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三月三十一日까지로 한다.

第二二條

本會 經費는 會費、贊助金、事業轉入金 等으로 充當한다.

第二三條

會長은 年度末에 다음 事項을 文書로 作成하여 理事會를 거쳐 定期總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 1、決算 및 豫算書
- 2、事業報告書 및 事業計劃書
- 3、其他 重要事項

第六章 解 散

第二四條 本會의 解散은 會員 三分의 二以上의 贊成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二五條 本會가 解散될 때는 全任員이 清算人이 되며 清算殘額處分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른다.

第七章 附 則

第二六條 本會에 다음의 組織體를 둔다.

1、顧問會

2、獎學會

3、紛爭調整委員會

4、其他親睦會

但、紛爭調整委員은 常任任員이 兼任한다.

第二七條 本定款 改正은 一九八六年 三月一日에 發效한다.

一九八六年 四月二十六日 改正

清州楊氏派宗會定款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清州楊氏 ○○派宗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는 市郡面里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崇祖道義精神을 宣揚하여 宗中 相互間의 親善과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 1、先祖奉祀 墓域 祠宇 齋閣守護 宗財保全 管理에 관한 일
- 2、宗派 宗中의 親睦에 관한 일
- 3、先祖의 遺物、史蹟保存 및 그 顯揚에 관한 일
- 4、大同譜刊行에 대한 協議 및 派譜 刊行에 관한 일
- 5、獎學 및 社會事業에 관한 일
- 6、其他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五條 本會는 二世祖別 中始祖別 또는 分派祖別 一家를 會員으로 하되 各己 分散되어 있거나 多數인 경우 高祖孫中 一人을 單位會員으로 하여 構成할 수도 있다。

第六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가 있다。

- 1、總會에서發言權 決議權 및 任員의 被選舉權
- 2、定款과 諸規程 그리고 總會 및 任員會의 決議事項을 遵守한 義務
- 3、宗務에 必要한 經費를 出捐한 義務

第三章 任 員

第七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顧問 若干名 但、派宗孫은 當然職으로 한다.

會長 一人

副會長 二人

理事 五人以上 十五人以內

監事 二人

有司 若干名

但 任員은 後孫이 많은 分派에서는 數를 늘릴 수 있다.

第八條

本會任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

1、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有司는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但、輪番制를 擇할 수도 있다.

第九條

本會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轄하고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3、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의 重要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4、監事는 本會의 會務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5、有司는 會長의 命을 받아 一般會務와 財政을 擔當한다.

第一〇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本會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但 重任할 수 있다.

2、任員中 缺員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서 이를 補充하며 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一一條 會長은 理事會의 同議를 얻어 顧問을 推戴할 수 있으며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總會와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一二條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宗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할 수 있다.

第四章 會議

第一三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臨時總會、理事會 常任任員會로 한다.

第一四條 總會 理事會는 年一回 月에 開催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會員 三分의二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會議 一週日前에 通知하여 이를 召集한다. 常任任員會는 會長이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第一五條 各級會議는 在籍人員 三分의二 以上 出席으로 出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贊反 同數일 때는 議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第一六條 總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定款改正

2、任員選出

3、宗財保金 管理 및 處分에 관한 일

4、事業計劃 및 豫決算에 관한 일

5、理事會 및 常任任員會에서 附議된 事項

6、其他 重要事項

第一七條 理事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1、總會에서 附議된 事項
- 2、宗財 宗務關係로 緊急을 要하는 事項
- 3、諸規程의 制定 및 其他事項

第一八條 常任任員(會長、副會長、有司)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執行한다.

- 1、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
- 2、事業 및 豫算執行에 관한 일
- 3、其他事項

第五章 宗財管理 및 財政

第一九條 派宗中 財産의 管理保存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派宗中 財産인 林野、農地 建物等 不動產 發記名義는 淸州楊氏○○派宗會代表 또는 管理人으로 한다. 但 農地는 耕作者가 宗人일 때 는 그를 管理人으로 하고 他人에 貸貸時는 門中農耕者 名義로 하되 모두 派宗會代表 또는 管理人을 表示하여야 한다.
- 2、現金 有價證券等의 派宗中 財産의 預置는 銀行 또는 農協에 하되 名義는 前項과 같이 하고 印章은 會長이 通帳은 有司가 各各 保管한다.

第二〇條 宗中財産의 賣買 處分에 있어서는 理事會 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二一條 本會의 經費는 會費 贊助金 宗財收入金 또는 事業轉入金으로 充當한다.

第二二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月 日에 개시하여 翌年 月 日까지로 한다.

第二三條 會長은 會計年度末에 다음 事項을 文書로 作成하여 理事會를 거쳐 總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 1、決算 및 豫算書
- 2、宗務報告書 및 宗務計劃書
- 3、其他事項

第六章 解 散

第二四條 本會의 解散은 會員 三分의二以上의 贊成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二五條 本會가 解散하였을 때는 任員 全員이 清算人이 되며 清算殘額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른다.

第七章 附 則

第二六條 本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規定의 通例에 따른다.

第二七條 派宗會에서 宗事에 관한 紛爭이 생겼을 때는 依法以前에 大宗會에 그 調整을 依賴하여야 한다.

第二八條 本定款은 一九八八年 九月十八日에 發效한다.

清州楊氏大宗會獎學會 定款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清州楊氏大宗會獎學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 事務所는 清州楊氏大宗會內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清州楊氏 子女로서 學業成績이 優秀하고 行實이 敦篤하면서 學資에 어려움이 있는 學生에게 獎學金을 支給하여 훌륭한 人材가 되어 宗門은 물론 나라의 참 일꾼이 되게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四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獎學生 選定 및 獎學金 支給

2、獎學基金 造成 및 그에 필요한 事業

3、褒賞 및 指導

4、其他 필요한 事業

第五條 獎學生 選定 및 支給에 관한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二章 會 員

第六條 本會는 本會 設立委員과 第三條의 目的에 贊同하여 基金을 出捐하는 一家를 會員으로 한다.

第七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가 있다.

1、總會에서의 發言權과 議決權

- 2、任員の選舉權과 被選舉權
- 3、會運營에 필요한 會費를 出捐할 義務

第三章 任 員

第八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顧問 若干名
- 2、理事長 一人
- 3、副理事長 一人
- 4、理事 五〇人以内
- 5、監事 二人
- 6、幹事 一人
- 7、事務員 若干名

第九條 本會 任員の 任免은 다음과 같다.

- 1、理事長、副理事長、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 2、幹事 및 事務員는 理事長이 任免한다.

第一〇條 本會 任員の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理事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 2、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但 常任할 수도 있다.
- 3、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의 主要案件을 審議 議決하며 필요에 따라 理事長이 理事中 一人을 常務로 指名하여 業務를 監理도록 한다.
- 4、監事는 本會의 業務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5、幹事、事務員은 上司의 命을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第二一條 本會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2、任員中 缺員이 생길 때는 理事會에서 이를 補充하고 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二二條 理事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을 推戴할 수 있으며 顧問은 理事長의 諮問에 應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二三條 任員은 名譽職을 原則으로 하되 常任任員과 幹事 및 事務員은 報酬와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四章 會 議

第二四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常任任員會로 한다.

第二五條 定期總會는 年一回 開催하고 臨時總會와 理事會는 理事長이 필요할 때 또는 理事過半數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理事長이 이를 召集하고 常任任員會는 理事長이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第二六條 總會, 理事會의 成立 및 議決은 다음에 의한다.

1、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成立되며 出席人員 過半數로 議決한다. 但、贊反 同數일 때는 議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第二七條 總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定款改正

2、任員選出

3、財産管理 및 處分에 관한 일

4、事業計劃 및 豫決算에 관한 일

5、其他 重要事項

第二八條 理事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 2、諸規程의 制定 및 改正
- 3、獎學生의 選定
- 4、財産管理 및 處分에 관한 緊急事項
- 5、其他 重要事項

第五章 財 政

第一九條 本會의 財政은 獎學基金을 基本 財産으로 하고 會費、贊助金 및 事業轉入金、利子收入金 등으로 充當한다.

第二〇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三月 一日에 始作하여 다음해 二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二一條 理事長은 會計年度末에 다음 事項을 文書로 만들어 理事會를 거쳐 定期總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 1、豫算 및 決算書
- 2、事業報告書 및 事業計劃書
- 3、其他 重要事項

第六章 解 散

第二二條 本會의 解散은 會員 三分의 二 以上の 贊成、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二三條 本會가 解散할 때는 任員 全員이 清算人이 되며 清算殘額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大宗會에 歸屬시킨다.

第七章 附 則

第二四條 本定款에 規程하지 않는 事項은 民法이 規定하는 通例에 따른다.

第二五條 本定款은 一九八八年 九月 十八일부터 發效한다.

獎學生選定 및 獎學金支給規程

第一條(目的) 이規程은 淸州楊氏大宗會獎學會의 獎學生選定 및 獎學金支給에 관한事項을 定하는데 그目的이 있다.

第二條(支給對象의範圍)

- 1、國內에 居住하는 淸州楊氏 男女 就學 學生에게 限한다.
- 2、獎學金 支給對象은 高等學校 以上の 各級學校 學生으로하며 支給範圍는 本會 基金造成 程度에 따른다.

第三條(獎學生選定) 學業成績이 優秀하고 行實이 敦篤하면서 學資 調達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다음 各項의 基準에 의하여

本會가 審議 決定한다.

- 1、高等學校 學生은 學業成績이 당해 學級의 一五% 이내, 大學生은 B學點以上(入學生의 경우, 高等學生은 中學校 三學年 成績, 大學生은 高等學校 三學年 成績)인 자로서 父母가 없는 자
- 2、아버지가 없는 자
- 3、아버지가 不具이거나 病患으로 生計가 支급히 어려운 자
- 4、家庭形便이 支급히 어려운 자
- 5、學業成績이 뛰어난 將來가 囑望되는 자
- 6、可及의 다른 곳으로부터 獎學金을 받지 않는 자

第四條(支給人員과 支給額)

- 1、支給人員은 本會 당해年度의 豫算範圍內에서 策定한다.
- 2、支給額은 高等學校 學生은 年 二〇萬圓, 大學生은 年 五〇萬圓으로 定한다.

第五條(支給日字)

- 1、獎學金 支給은 學校別 納期를 감안하여 一定期日에 支給한다.
- 2、支給期間은 本會 豫算形便上 一年一回를 原則으로 한다.

第六條(獎學金の支給中止) 選定된 獎學生이 다음 各項의 一에 해당할 때는 支給中止 내지 支給額을 還收한다.

- 1、就學 學校로부터 除籍 停學等 懲戒處分을 받았을 때
- 2、一學期以上 休學했을 때
- 3、獎學金을 目的以外의 用途에 使用했을 때
- 4、學業成績이 顯著하게 低下되었을 때
- 5、他處로부터 充分한 獎學金을 받게 되었을 때

第七條(獎學生의 推薦節次) 本會의 獎學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所定 書類를 具備하여 派宗會長 또는 宗中代表의 推薦狀을 添付하여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 | |
|---------------------|-----|
| 1、戶籍謄本 및 住民登錄謄本 | 各一通 |
| 2、入學許可書 또는 在學證明書 | 一通 |
| 3、學業成績證明書 | 一通 |
| 4、財產證明 또는 生活保護對象者證明 | 一通 |
| 5、派宗會長 또는 宗中代表證明書 | 一通 |

一九八八年 九月十八日 制定

顧問會則

第一條 本會는 淸州楊氏大宗會顧問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大宗會 定款 第二五條에 의하여 構成하며 事務所는 大宗會內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大宗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大宗會의 事業에 積極 協贊하여 淸州楊氏 中興에 이바지한다。

第四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議長 一人

2、副議長 五人

3、運營委員 一三人

4、幹事 二人

第五條 議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轄하고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며 議長有故時 議長을 代行한다。但、副議長 一人은

大宗會 常任副會長을 當然職으로 한다。

第六條 運營委員과 幹事는 議長의 意思를 받들어 會의 運營을 맡는다。

第七條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며 議長은 輪番制를 原則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는 年次總會와 定例會를 두며 필요에 따라 隨時로 議長이 召集할 수 있다。

第九條 本會의 財務는 大宗會가 掌理한다。

第一〇條 本會가 필요로 하는 細則은 議長團이 定한다。

一九八八年 九月十八日 制定

清州楊氏大宗會任員錄

熙	澈	貞	熙	旭	鍾	海	慶	澈	喜	澈	福	大	文	範	澈	致	在
宗孫	會長	副會長						監事	理事								
忠南論山郡 上月面 酒谷里	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一〇五一六七	〃 西大門區 弘濟二洞 八二一一〇九	京畿道 華城郡 麻道面 白谷里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阿峴洞 一一三一二九	〃 江南區 方背洞 九二〇一二八	大邱直轄市 壽城區 池山洞	서울特別市 瑞草區 盤浦洞 八一〇〇	서울特別市 冠岳區 奉天洞 一八〇一四五	〃 中區 萬里洞二街 二三一一二八	〃 西大門區 南加佐洞 三三四一一一	忠南論山郡 上月面 酒谷里 六二	京畿道 光明市 鐵山洞 住公아파트 一三團地 一三〇七棟 一三〇五號	〃 華城郡 麻道面 白谷里 四二二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面牧一洞 九一一七一	忠北 槐山郡 曾坪邑 曾川里	〃 〃 砂梨面 中興里	서울特別市 銅雀區 黑石二洞 三五一一〇
〇四六一・三二一四二〇八	七一一・三五五五	七三七・五二九七	〇三三九・六一一五九二	三六三・四九六四	五八三・三一五八	〇五三・七六二一六三三六	五九九・四二〇一	八七八・四〇一九	三九二・四〇九二	三七二・六三七九	〇四六一・三二一四四三五	六八七・三一八九	〇三三九・六一三〇八三	四九三・一五七七八	〇四四五・三六一三四四	〇四四五・三六一七二八〇	八一四・一三三四二

景鍾淇繪明仁泰海永敦夏泰宅城甲淇錫
宇漢周周準錫植權壽錫赫珍鎮虎郁元烈鋪

慶北 永川郡 華南面 仙川洞
慶北 永川郡 華南面 仙川洞
釜山直轄市 東萊區 巨堤一洞 一四六六—一九
서울特別市 恩平區 驛村洞 一八四—六
" 大門區 祭基二洞 一三五—七
忠南 論山郡 鍊武邑 安心里
" 錦山郡 秋富面 場岱里 五三九
大邱直轄市 北區 國優洞 一九六
서울特別市 江西區 禾谷洞 七三一—四七
慶北 達城郡 多斯面 達川洞 八二—二
"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弘濟三洞 二六八—七四
京畿道 抱川郡 永中面 金珠里 六六
慶南 昌寧郡 遊漁面 光山里
" " 陳倉里
서울特別市 恩平區 龜山洞 二七一—三
忠北 清州市 社稷洞 二六〇
釜山直轄市 東萊區 釜谷洞 三八四—一八

○五六三・三三—七五—三
○五六三・三三—七四八二
○五一三・三三—〇九八九
三五九—一一九一
九二六—二七五七
○四六一・六一—〇四一六
○四一二・五二—五四〇〇
○五三・三〇—一〇三三
六〇五—七三〇九
○五三・五五二—〇五七五
○五三・五二—三七八五
七三六—四二九七
○三五七・三二—八九六八
○五五九・三二—七四〇四
○五五九・三二—七八七八
三八七—六五四一
○四三一・四—三二一五
○五一・六五—五三一七

顧問會員兼獎學會設立委員錄

致麟致光煥煥致德榮百文鍾政澈鳳淳澈澈
誠錫雨錫國吉宛英志源周根錫完植植坤愚

政丞公龍仁派門中代表

鳳致泰重永致壬辰在萬基慶樂元鳳夏基貞
鶴炳珍根熙馨錫錫植枝榮植柱溶雄赫成圭

永朋任昌喜寅宅在廷廷海致致致始晉禮珍
福錫鍾萬雙錫鎮哲權雲龍元和億榮錫鍾秀

西平君利川派門中代表

鍾 兌 東 根 福 德 允 熙 成 載 載 柱 澈
泰 植 沃 培 雙 洪 奎 玉 福 昌 成 錫 淳

城 澈 性 鍾 時 翼 承 盛 九 燦 鎮 繪 淇
郁 文 周 成 南 周 培 植 烈 宇 尼 周 周

密城君派宗中代表

教 勝 濟 潤 性 成 成 福 敏 永 熙
錫 元 千 宅 溫 仁 旭 赫 弘 台 永

西平君新寧派道林門中代表

清州楊氏大宗會獎學會任員錄

顧問

		理	監	副	理
" "	" "	" "	" "	" "	事
		事	事		長

文鍾熙鳳允澈貞澈九兌德淳鳳元正慶燦麟
周根甲植奎坤圭愚烈植英植雄溶秀植宇錫

理事

|| || || || || || || || || || || || || || || || ||

益時在任熙柱宅泰基致永盛吉鎮鍾明煥澈
周南春鍾玉錫鎮珍榮炳台植守尼泰準吉武

理事

" " " " " " " " " " "

世 杲 昶 勝 民 仁 文 濟 辰 敦 廷 致 守
澤 植 榮 元 權 錫 的 千 錫 錫 雲 元 鍊

禮考篇

朱文公의 家禮를 基準으로 四禮便覽이 刊行된 後 四色黨爭으로 因하여 家禮도 四色으로 大同小異하게 變更되었음

옛부터 우리나라를 東方禮儀之國으로 自處하고 살아온 우리 先祖들은 우리에게 엄격하고도 자랑스러운 禮法度를 유산으로 물려 주었다. 이 유산은 다시 없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갖가지 폐단을 自招하기도 하였다.

家禮에 대한 歷史의 由來를 살펴보면 그 文獻이 방대하여 다 기록할 수 없으나, 周禮에서 家禮란 말이 쓰인 것은 이미 三千年이 넘었고 中國 宋나라 朱熹(朱子)라는 學者가 家禮를 지은 후로부터 冠·婚·喪·祭에 對한 禮節을 알게 된 것 같다. 이것을 일러서 「朱文公家禮」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高句麗, 百濟, 新羅를 거쳐 高麗, 朝鮮時代로 내려 오면서 體系的으로 制度化하여 英廟時에 陶菴李穡의 「四禮便覽」이 나왔으며 특히 朝鮮中葉에 와서는 禮論으로 발전하였고 또 그것으로 해서 四色黨爭을 이룬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반면 儒敎를 바탕으로 한 禮禮는 崇祖理念과 忠孝精神·文化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有名한 禮學者들의 理論에 의하여 禮禮가 遷變을 거듭하여올 때 四禮 即 冠·婚·喪·祭가 그 소속당파나 가문에 따라 行事節次가多少나 다르게 傳하여져 왔던 것이다.

近世에 와서 日政三十六年の 受難期와 八·一五해방 이후 民主主義社會로 바뀌면서 우리의 현대 生活樣式이急速히 西洋風俗을 많이 따르게 됨

으로 하여 四禮 중에서 冠禮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婚禮도 또한 거의가 東洋式도 아니고 西洋式도 아닌 이상한 儀式으로 바뀌어졌으며 家庭禮禮 중에서 그 節次가 가장 까다롭고 번잡하고 理論이 많은 喪禮도 차차로 簡素化되었고 祭禮도 또한 簡便을 爲主로 變貌되어서 佛式과 西歐式의 混合으로 많이 바뀌어졌다.

政府에서는 오랫동안 말이 많고 폐단도 많은 옛날의 家庭禮禮를 簡素하게 만들어서 一九六九年 家庭禮禮準則을 制定公布 하였다. 그러나 그 家庭禮禮準則마저도 朱文公家禮와 陶菴의 四禮便覽을 바탕으로 해서 抽出한 것이고 보면 于先 우리 先祖들이 지켜 왔던 四禮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옛부터 지켜 내려오는 禮儀節次와 陶菴의 四禮便覽과 朱文公家禮를 基準으로 要略 하였다.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의 內實을 期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하고 여러 禮文을 抄하여 우리 日常生活에서 항상 필요한 대목만을 간추려서 例舉한다.

一、冠 禮(관례)

現代에서는 나이가 만 二十歲가 되면 成人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十五歲 以上이면 冠禮를 올렸다. 冠禮(관례)라 하는 것은 일종의 成人式이다. 이날에는 아침 일찍이 祠堂에 酒果로 告하고 告事者가 일정한 節次에 따라 禮式을 거행하였는데 그 의식이 아주 복잡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極히 一部地方에서 볼 수 있으나 舉論할만한 것이 못되기에 省略한다.

二、婚 禮(혼례)

婚禮는 六禮라 하여 다음의 節次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六禮는 다음과 같다.

納采(납채) 新郎 집에서 新婦 집으로 禮物를 보낸다.

問名(문명) 兩家에서 서로 이름을 묻는다.

納吉(납길) 新郎 집에서 新婦 집으로 婚姻을 통지한다.

納徵(납징) 新郎 집에서 新婦 집으로 靑緞紅緞(페백)을 보낸다.

請期(청기) 新郎 집에서 婚日을 정하여 新婦 집에 可否를 묻는다.

親迎(친영) 新郎이 新婦를 맞는 禮式을 올린다.

그러나 近來에는 이러한 절차를 줄이고 新舊折衷(신구절충)으로 折減하게 行하는 것이 一般化 되었다.

1、請婚·許婚(정혼·허혼)

舊禮로는 男子側에서 婚姻의 의사가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請婚하지 않고 仲媒者에게 書面으로 仲媒를 청하는 것이 禮로 되어 있다.

2、四星(사성 혹은 사주)

四星은 四柱라고도 한다. 雙方에서 혼인에 합의하면 新郎측에서 四星을 보낸다. 四星이란 신랑의 生年月日時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쓴다.

○ 四星書式.. 簡紙를 七張으로 접어서 가운데에 쓴다.

某貫后入姓名(手決)			
干支某月某日某時			
年	月	日	

※ 手決 〓 오늘날의 姓인하는 것과 같으며 성명은 新郎의 姓名

四柱皮封

四 星

四柱內皮封

--

3、渭 吉(연길)

渭吉은 結婚式 日字를 정해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新郎 집에서 四星을

보내오면 新婦집에서 結婚式 日字를 擇日하여 通知하는 것이다. 이 洞吉 書式은 다음과 같다.

奠雁 某年某日某時
納幣 險時先行

簡紙를 七牒으로 접어서 가운데 쓰는것은 四星과 같다.

皮 封 外

洞 吉

皮 封 內

某 生員 謹拜上狀 下執事

奠雁은 結婚式을 말한다. 四星을 받은 後 新婦집에서 洞吉을 보낼때의 書狀 「洞吉送書狀 書式」

복승화한 伏承華翰하오니 감하무량 感荷無量이오이다.

근심자자 謹審玆者에

존제후만중 앙위구지지 제여아혼사 既承柱單하오니 寒門慶事라 洞 尊體候萬重 仰慰區區之至라 第女兒婚事는 餘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하옵니다. 吉錄보하오니 章製回示하십시여하 餘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하옵니다.

年 月 日

모판후인 某賁后入 ○○○ 再拜

※皮封은 四星을 보낼때와 같이 하되 奠雁皮封에만 洞吉이라 쓴다.

譯解..엷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感謝한 마음 限이 없습니다. 요즈음 尊體萬安 하십니까. 저의 女兒婚事는 이미 四星單子를 받자오니 저의 家門에 慶事이오며 이제 結婚日字를 가려서 삼가 보내오니 어떡 하올런지 下回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 衣 製(의제)

洞吉書狀을 받은 新郎側에서는 新郎의 衣服걸이와 품을 新婦側에 알리는 衣製狀을 보낸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개의 경우 이 節次가 省略되고 직접 洋服店이나 洋裝店에서 衣服을 맞추게 됨으로 說明을 줄인다.

5. 納 幣(납폐)

洞吉狀과 衣製書狀이 끝나면 結婚式 전날에 新郎側에서 新婦側에 新婦用婚需(衣類)와 佩物과 禮狀(婚書紙)및 物目을 넣은 婚需兩을 보내는데 이를 納幣(납폐)라 하여 一定한 格式이 있다. 納幣禮狀을 쓰는 종이는 韓紙를 長三六cm 幅六〇cm 程度로 하여 九間으로 접어 兩便을 一間씩 비우고 七間에 쓴다.

禮狀式(예장식)

시유명춘 時維孟春(隨時)

존제백복 복지제장자
尊體百福僕之第長子(次子、三子、姪、孫弟某(新郎名)年既長成未有仇
讎 伏蒙尊茲許以令愛(令孫女、令姪女、令妹) 寢室 妓有 先人之禮 謹行
納幣之儀 不備

존조 근배상장
尊照 謹拜上狀

年 月 日

모관후인
某貫后人 ○○○ 再拜

譯解..요즈음 복이 무르익은季節이 온데 尊體 百福하십니까. 저의
長子 某(名)가 이미 성장하여 配偶이 없더니 높이 사랑하심을 입자
와 귀중한 따님으로 짝을 맺게하여 주시어서 이에 先人의 禮에 따
라 삼가 納幣하는 儀式을 行하오니 살피 주시기를 바랍니다.

6. 再三婚時の 禮狀書式(재삼혼 때 예장서식)

복송
伏承

가명하이
嘉命許以

정애상실우 복지장자모명 자유선인지례 근행 납폐지의 불비복유 존조
令愛寢室于 僕之長子某(名) 妓有先人之禮 謹行 納幣之儀 不備伏惟 尊照

근배상장
謹拜上狀

年 月 日

(物目書式)

物	目
玄	壹段
纁	壹段
除	
年	月 日
日	某貫后人 ○○○

(重皮封)

謹封	謹封	謹封
----	----	----

※ 禮狀皮封은 上下를 通(封하지 않음)하게 하고 重皮封을 上中下로
고르게 謹封을 끼운다.

婚需封送式(혼수봉송식)

婚需를 封함에는 兩에다가 白紙를 깔고 먼저 禮狀을 넣는 다음에 衣類
(衣類는 白紙를 7cm程度の 幅으로 捲어 衣類마다 中間을 封하고 그 위에
品名을 쓴다)를 넣되 赤色 옷감을 먼저 담고 青色 옷감을 그 위에 넣어 白
紙로 덮고 안에 담긴 옷감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만들고 兩을 닫는것. 그
리고 보자기로 婚需函(혼수함)을 싸서 보낸다. 이 婚需品이 新婦집에 이
르면 대기했던 新婦의 父親이나 親戚中에 壽福 많은 사람이 衣冠을 整齊
(정제)하고 敬중하게 받는 법이다.

以上이 結婚式 전에하는 節次들인데, 또 新郎側에서 新婦側을 위하여

(物目皮封)

物	目
謹封	

(禮狀皮封書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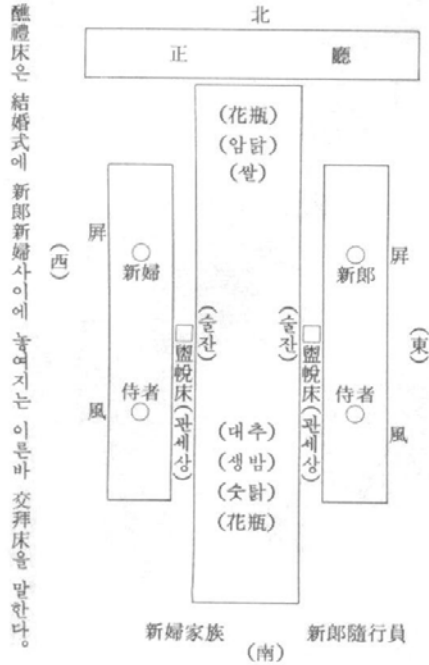
某(姓)生家 禮束
謹拜上狀
某生員 下執事

마련한 物品 一切를 列記한 物目을 近間에는 納幣日에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物目紙는 皮封에 넣지 않고 병풍식으로 접는다.

7. 奠雁禮·醺禮床(전안례·초례상)

結婚式을 奠雁禮라고 하는데, 納幣가 무사히 끝나면 구식으로 新郎이 新婦집으로 가서 奠雁勿記(전안홀기·式願)에 따라 禮式을 올린다. 이때 新郎은 盛裝에 「紗帽冠帶官服木屐(사모관대 관복 목화)」을 착용하고 新婦는 머리에 拾冠 또는 花冠이라 불리우는 「꼭두리」를 쓰고 「연지」를 찢고 紗布(사포)로 앞을 가리고 저고리는 黃色 비단치마는 紅色 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 위에 圓衫(원상)을 입는다. 圓衫(원상)은 연두색 바탕에 자주 것을 달고 색동을 달아 짓는다.

(醺禮床設備圖)



醺禮床은 結婚式에 新郎新婦 사이에 놓여지는 이른바 交拜床을 말한다.

三、喪禮(상례)

우리나라는 古來로 冠·婚·喪·祭의 禮가 複雜하고 까다로우나 그중에서도 喪禮(상례)가 가장 까다롭고 所謂 禮論도 많았다. 아직도 대개가 初喪喪禮時「執事分定(집사분정)」即 護喪(호상), 祝(축), 司書(사서) 司貨(사화) 造殯(조빈), 敦匠(돈장), 日直(일직) 등을 정하여 喪事全般를 執行하고 있으나 實際는 이것이 形式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大宗만을 추려서 現實에 맞추어 簡略하게 說明하는 수밖에 없으며 主로 父母喪의 境遇를 中心으로 한다.

1. 喪禮全般(상례전반)

① 初 終(초종)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回春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까운 親族에게 통지하고 주위를 조용히 하여 근신하고 환자는 의복을 平常服中에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게 한다. 遺言이나 遺言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거나 錄音으로 收錄하여 보관토록 한다. 禮論에 殯命함에 있어 男子는 『不絶於婦人之手하고 婦人은 不絶於男子之手』即 男子는 女子의 손에 殯命을 아 니하고 女子는 男子의 손에 殯命을 아니하는 것이 禮法이라 하였다.

② 收 屍(수시)

유명(殯命)이 확인되면 눈을 감게하고 시체(屍體)의 머리를 북쪽으로 모 아게 하여 바르게 눕히고 두 손을 배위에 모아 부드러운 천(布)으로 묶고 머리는 바르게 비트리지지 않도록 피이고 발은 바르게 묶고 귀와 코를

풀숨이나 탈지면으로 막는다. 옷이 볼로 시신을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리우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전례(傳來)의 禮法이다. 收屍를 「襲(습)」이라고도 한다.

③ 皐 復(고복)

고복은 초혼(招魂)이라고도 하여 故人の 속저삼(內衫)을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左手)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右手)으로 옷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고인(故人)의 姓名이나 칭호 즉 『모봉모씨 복』을 세번 연거푸 부르고 옷은 가져다가 시신위에 덮는다. 收屍와 招魂은 거의 동시에 한다. 招魂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號哭하는 것이 옛 禮法이다.

상을 당하면 都市에서는 店舖나 或은 喪家에 喪中表示을 하고 있는데 大門위에 吊燈을 달고 喪中이라고 써서 表示한다. 忌中이라고 흔히 써서 붙이는데 忌字는 父母喪의 小心畏忌라는 忌字이므로 手下人에 쓰면 妄發이 되므로 喪中이라고 쓰는 것이 手上手下를 莫論하고 適當하다. 喪主들은 洗面이나 沐浴을 삼으며 원래는 三日不食이라 하나 肉食 強食을 삼으며 미음(米飮)이나 죽(粥) 등으로 素食하는 것이 옛 法式이다. 그리고 衣服은 殯命 招魂後에는 사치스럽지 않은 白衣에 白色 두루마기를 입혀 成服禮까지 외간상(外艱喪)에는 左便소매를 껌고 내간상(內艱喪)에는 右便소매를 껌고 晝夜로 葬禮時까지 哭을 그치지 않는다.

④ 訃 告(부고)

喪을 當한 事實을 一家親戚·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訃告라고 한다. 訃告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告 訃

族弟某大人(父親)(母親은 大夫人、祖父는 王大人、祖母는 王大夫
人等)某官 또는 學生某貫 某氏以宿患(隨其事態)某月某日某時別世
玆以訃訃(人便으로 할 때는 專人告訃라고 쓴다)

發訃 月 日 時 自宅
葬地 所在 地名

護喪 ○ ○ ○ 上

某生員 座前

護喪은 장의위원장(葬儀委員長)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인의 免服、胃孫 또는 親族中高行者(門中어른)가 되는 것이 常例이나 官爵이 있거나 名望이 있는 분이면 他姓이라도 無妨하나 이같이 他人이 護喪이 될 때는 訃告書式이 달라야 한다. 近來에는 護喪外에 嗣子 次子 孫 親族代表 友人代表等을 訃告에 列記하고 있으나 古禮에는 맞지 않는 일로서 訃告는 護喪이 내는 것이다. 喪主가 直接訃告를 할 때는 다음과 같다.

某親某人以某月某日得疾不幸於某月某日棄世玆以訃訃
月 日 孤子 某 泣血

⑤ 小 殮(소렴)

殮(殮)은 죽은 다음 날(死之明日)에 한다. 死後二十四時間이 지난 뒤에 殮을 하는 것이 原則이다.

●香湯水(향물)를 만들어 얼굴을 비뚫하여 전신을 닦는다.

●殮의(殮衣)로 갓아입힌다. 殮衣는 壽衣라고도 하며 亡人이 입는 옷을 말한다. 家勢에 따라 木棉이나 絹布(명주)로 만든 上下衣 深衣(속



적삼 바지저고리) 또는 道袍(도포)로 되어 있다. 殮衣로 갈아 입히고 나면 버선(襪)을 신고 단님(端衽)을 매고 행전(行纏)치고 腰帶(허리끈)과 大帶(도포의 끈)을 매고 한지(漢紙)나 마포(麻布)로 만든 신을 신는다. 머리에 冠이나 유건(儒巾)을 씌우고 다섯개의 적은 주머니에 손톱 발톱 머리털을 잘라 각각 따로 넣어 두었다가 대렴(大殮)때 같이 넣는다. 귀와 코를 다시 막고 柳匙(버드나무 숟가락)로 불런 쌀 세 숟갈과 엽전 또는 동전 세 닢을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입속에 세 번씩 넣는다. 쌀은 한번 넣고 천석(千石) 두 번 넣고 만석(萬石) 세 번 넣고 십만석(十萬石)이요 라고 외치고 또 엽전(葉錢) 또는 동전(銅錢)을 한번 넣고 천냥(千兩)이요 두 번 넣고 만냥(萬兩)이요 세 번 넣고 십만냥(十萬兩)이요 하고 외친다. 이것은 亡人이 저승전에 食糧과 路資로 드리는 儀式이다. 그리고 명목목전(瞑目幅巾)으로 얼굴을 덮는다. 악수(握手)로 손을 가리고 두 팔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솜을 漢紙나 麻巾으로 싸서 턱 밑에 고이고 발목도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위와 같이 피고 殮이불(天衿과 地褥)로 屍體를 싸고 殮布로서 屍身을 묶는다. 「屍身을 묶는 일을 殮한다」고 하는데 그 要領은 다음과 같다. 장매는 屍身을 세로(縱)로 묶는 것으로 그림 1과 1·2와 1·2를 먼저 묶

고 가로(橫) 매도 번호대로 연결하여 묶되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서 꿰으며 위로부터 아래로 차례 차례로 내려 묶는다.

장매는 麻布 全幅으로 하고 가로매는 麻布 全幅 三枚 半幅 一枚로 하되 全幅의 양끝을 半으로 點線처럼 잘라 일곱 묶음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시체를 연결할 때 綱布나 麻布를 쓰는 것은 後日 유골의 모전을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殮을 할 때 使用되는 衣類器具나 名稱이나 製作法은 說明을 略하고 이와 같은 作業은 原則으로 大概 喪主側 近親知들이 하며 또 내간상(內艱喪)은 他人을 시킨다는 것이 좋은 일은 못된 줄로 안다.

⑥ 大斂·入棺(대렴·입관)

殮命後 三日에 관을 시신이 있는 방으로 옮겨서 棺이불을 관속에 피고 관요를 깔고 침(枕)이라고 불솜을 넣어서 만든 버개를 머리가 놓일 곳에 놓고 시신을 관내에 넣고 棺이불로 시신을 싼다. (以上이 大斂)

이것이 끝나면 고인의 의복, 마포 등을 넣어 시체가 관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음 천개(天蓋)라고 하는 관 뚜껑을 덮고 나무 못(木釘)으로 고정시키고 유지나 초석으로 싼다음 結棺繩으로 묶는다. (以上이 入棺) 入棺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室內에 관을安置하는데 葬日 이 급하면 室內에 安置하여 屏風으로 가린다.

⑦ 成服(성복)

入棺이 끝나면 喪主를 비롯한 服人(故人의 親戚 別途 五服圖 參照)은 內衣를 갈아 입고 喪服을 갖추고 成服祭를 지내고 外人의 問喪을 받는다.

⑧ 殯 所(빈소)

屍身の安置와는 別途로 靈座를 마련 하는데 이를 殯所라 하며 室内에 屏風을 치고 그 앞에 交椅祭床香案香爐香盒 茅砂等を 配設하고 喪主는 吊 慰에 應接한다.

(註) 交椅(교의) 神位를 모시는 椅子

祭床(제상) 祭物을 陳設하는 상이 놓은 床

香案(향안) 香爐와 香盒을 올려 놓는 小盤

茅砂(모사) 小器에 깨끗한 모래(細砂)를 담아 그 中央에 若干의

茅(의)를 꽂는데 茅沙만드는 法은 祭禮篇에서 說明한다.

⑨ 喪 服(상복)

喪服은 喪主가 입는 衣冠으로서 祭복 紵冠(喪冠) 수절(首絰) 요절(腰絰) 등이 있는데 요즈음은 장의사에서 만들어 판다. (도표생략)

⑩ 魂帛(혼백)

魂帛은 五色실로 만든 同心結을 끼워 魂帛兩에 넣어 모신다. 同心結은 家門에 따라 넣지 않는다. 宋尤菴은 넣지 말라고 했다.

〈魂帛 접는 法〉

魂帛은 배(麻布) 한 폭(全幅)과 길이 一尺三寸을 쓰는데 이것을 一寸五分씩 여덟접으로 접으면 남는 것이 一寸이 된다. 이것을 펴서 편리상 도표와 같은 순위를 첨하여 도표 (一)과 같이 접기 시작한다.

- 1, 도표의 번호 一을 번호 二와 맞닿게 접음.
- 2, 번호 三을 반등분하되 三이 보이게 접어 一의 뒷면으로 가게 접는다.
- 3, 번호 四을 접되 四가 보이게 하여 二의 뒤에 가게 접어야 한다.

- 4, 번호 五의 중간을 접되 五가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一의 뒷면에 가서 三과 마주되게 접으면 번호 五는 보이지 않게 된다.
- 5, 번호 六과 번호 四가 서로 맞닿게 되면 즉 그렇게 접으면 六은 자연히 보이지 않게 된다.

6, 번호 七은 접어서 번호 六의 뒷면에 붙이면 七은 보이게 된다.

7, 번호 八을 七과 맞닿게 붙여서 접어야 한다.

8, 번호 四와 六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橫)의 뒷면(上邊)을 一寸(寸)으로 접어 四와 六에 붙게 안으로 접어야 하며.

9, 번호 七과 八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橫)의 아랫면(下邊)을 一寸 접어서 七과 八이 붙게 안으로 접고 벌리기 전대로 접는다.

10, 번호 九를 접되 번호 四의 아랫면(下邊)과 뒷면(上邊) 접는 것을 싸서 꽂으면 된다.

11, 도표와 같이 위(上)를 백지로 표시하되 번호 八의 뒷면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 魂帛 접는 法(圖表參照)

⑪ 銘 旌(명정)

銘旌은 紅色 비단이나 명주의 全幅에 1m 60cm 정도의 길이로 白粉에 아교(阿膠)를 섞어나 (金粉)으로 故人的 顔貌과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하며 書式은 다음과 같다.

(銘旌 쓰는 법)

學生 某 賈公之 柩 (男子)

孺人 某 封 某氏之 柩 (女子)

※ 棺上銘旌도 같음

⑫ 同心 結(동심결)

오색실을 신척 一尺五寸 길이를 합해서 실가락을 가운데를 손가락에 두번 감아서 고리 둘을 매고 다시 좌편 실가락을 잡아 위로 돌려서 좌편 고리를 내고 우편 실가락을 잡아 위로 돌려서 우편 고리를 매고 다시 좌편 실가락을 잡아 우편 실가락에 얹어 우편 고리 위로 꺾어 밑으로 돌려 한편 고리에 끼어서 잡고 우편 실가락을 잡아 편좌 실가락에 얹어 밑에서 뒤로 돌려 위에 있는 쌍고리 가운데로 끼여 올려 좌편 실가락 얹친 사이로 끼어서 고르게 당기면 앞에는 井字가 되고 뒤에는 十字가 된다. 동심 결원 의 쌍고리 밑에 가죽을 끼여 막도록 고른다. 이렇게 만들에서 혼백상(魂帛箱)에 담는다. 同心結을 안쓰는 집도 많다.

⑬ 魂帛箱(혼백상)

혼백상은 혼백을 넣어두는 상자로서 종이 三、四개를 부해서 밑바닥은 四方이 신척 六寸으로 하고 높이는 五、六분으로 하고 길바탕은 六寸五分 되게 한다. 앞에는 前이라 쓰고 뚜껑 한 복판에 손잡이를 만든다.

⑭ 功 布(공포)

공포라 하는 것은 삼베로 二尺(침척) 가량으로 하여 上은 대나무를 넣어서 삼노끈으로 양쪽을 달아 대나무 끝에 달고 상여 앞에 간다.

(一) 魂帛 집는 법



(魂帛 집는 圖表)

9	8	7	6	5	4	3	2	1	

⑮ 誌 石(지석)

돌 또는 비돌 사기 등으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製作하여 墓前에 묻는다.

規格

長(길이)……二十 匁程度 廣(넓이)……十 匁程度 厚(두께)……七 匁程度

記載要領

上面(윗쪽)……本貫 姓名

前面(앞쪽)……生年月日死亡年月日配位者姓名

後面(뒷쪽)……主喪의 姓名

底面(밑쪽)……故人的 略歷

記錄方法

或 또는 陽刻 陰刻으로 한다.

사반의 경우 前記事項을 간단하게 안쪽에 記人하고 재를 채워서 얻어 묻는다.

2. 葬禮(장례)

① 擇 地(택지)

地師(俗稱風水라고 함)로 하여금 葬地를 정하게 한다. 父母가 老齡이 되면 미리 定해 두기도 하나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殞命後 서둘러 안장할 곳을 정해야 한다.

② 擇 日(택일)

日官(五行說에 依하여吉日을 선택하는卜術家)으로 하여 葬日을 정한다.

③ 發 輓(발인)

喪輿가 葬地로 떠나는 것을 발인(發輓)이라 한다. 판을 마당에 놓고 發輓祭를 지낸다. 棺앞에 屏風을 치고 祭床에 祭需(제사음식)을 차리고 祝文을 읽는다. (祝文別示) 喪主는 哭을 그쳐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祝文 읽을 때 만은 哭을 그친다. 이 祝文을 發輓祝 혹은 遺奠祝이라 한다.

④ 出 喪(출상)

發輓節次가 끝나면 喪輿(상여) 또는 靈柩車가 葬地로 떠난다. 徒步로 喪輿를 모실 때는 다음 次例로 행렬을 짓는다. 吊旗(조기) 換書(환서) 靈亞(윤아) 功布(공포) 銘旌(명정) 靈位(영위) 行喪引導者(행상인도자) 喪輿(상여) 喪主(상주) 白官(백관) 故人的親戚中服人(吊客(조객))

⑤ 道中停喪(도중정상)

運喪途中 停喪하여 路祭를 지낼 경우 적당한 곳에 停喪하고 祭需를 마련하여 祭祀를 지내는 데 이것은 故人的弟子나 友人 또는 契員 등이 故人을 보내는 告別人事로 祭文(제문)을 읽어 故人的遺德을 追慕하고 업적을 찬양하는 등이 內客이 된다.

⑥ 靈 輦(영아)

喪輿가 墓所에 이르기 前에 魂帛을 모실 靈輦(천막)을 치고 조문을 받음을 치고 기다린다. 묘소 부근에 遮日(天幕)을 치고 그 아래에 屏風을 치고 祭床을 놓고 交椅(흔백)를 祭床머리에 놓아 자리를 마련하여 둔다.

⑦ 設 奠(설전)

魂帛을 交椅에 모시고 祭需를 차리고 상주는 哭을 한다.

⑧ 吊 問(조문)

葬地에 온 吊客은 設奠한 곳에 나아가 魂帛에 再拜하고 喪主에게 吊慰하고 白官들에게 人事를 한다. 이때 喪主는 우편에 白官은 左便에 整列하고 吊問客이 吊慰한後 吊辭를 끝내고 일어설때까지 喪主는 兩手로 땅을 집고 꿇어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吊客이 일어선 뒤에 일어셔야 한다.

⑨ 山 神 祭(산신제)

喪主의 親戚中에서 喪主를 代身하여 山神祭를 지낸다. 祭需를 마련하여

祝文을 읽고 墓所의 保護를 依頼하는 祭祀를 올리는 것이다. (祝文列示)

⑩ 下 棺(하관)

喪主는 止哭하고 下棺에 參與하되 직접 下棺作業에 參하는 것은 아니다. 下棺은 棺을 墓穴中(광중)에 넣는 일로 布나 繩을 棺 밑에 넣어 조용히 들어서 水平이 되도록 墓穴에 넣고 布나 繩을 繫어낸다. 棺의 左上側에 雲, 右上側에 亞를 넣고 棺 위에 銘旌을 덮고 天蓋로 그 위를 덮는다. 음함을 채우고 封墳(봉분)을 만든다. 喪主는 靈位로 돌아가서 吊問을 받는다.

⑪ 成 墳(성분)

墳墓의 高는 約四尺(一m二〇cm) 程度로 縱이 약간 길고 橫이 짧게하고 外部를 잔디(또)로 덮는다.

墳墓前面에 墓碑를 세우되 墓碑前面에는 故人的 官職姓名某之墓라고 쓰고 裏面에는 世系와 行蹟 등을 記錄한다. 墓 앞에 床石을 놓고 床石 앞에 香爐石을 놓는다. 이와 같은 作業을 石物을 갖춘다고 하는데 葬禮當日에 꾸는 것이 아니고 事後에 形便에 따라 하면 된다. 事後에 具石物을 할 때는 祝文을 읽고 告由(고유)를 해야 한다. (祝文別示)

⑫ 返 魂(반혼)

成墳役事가 完全히 끝나지 않더라도 白官에 冥일을 마치고 平土祭를 마치면 喪主는 魂帛을 모시고 歸家한다. 집에 도착하면 內喪主들은 大門 밖으로 나와 魂帛을 맞이하며 內外喪主가 相向揖哭하고 魂帛을 殯所에 모신다.

⑬ 初 虞(초우)

返魂하여 돌아오면 곧 祭祀를 지내는데 葬儀當日에 返魂하여 지내는 祭祀가 바로 初虞祭이다. (祝文列示)

⑭ 再 虞(재우)

葬禮다음 첫 柔日에 (유일은 乙·丁·己·辛·癸日) 再虞祭를 지낸다. 再三虞 卒哭 小祥은 質明(일은 아침) 大祥은 厥明(첫새벽)에 지낸다. (祝文別示)

⑮ 三 虞(삼우)

葬禮後 첫 剛日에는 三虞祭를 지내고 墓所에 가서 省墓를 한다. 剛日(강일은 甲·丙·戊·庚·壬日)은 대개 葬日後 三日 乃至 四日만이 된다. (祝文別示)

⑯ 卒 哭(졸곡)

三虞後 三個月을 넘지 않는 마지막 剛日에 卒哭祭를 지낸다. (祝文別示)

⑰ 附 祭(부제)

卒哭翌日이 附祭이나 形便에 따라 小大祥翌日에 卒哭祭와 같이 饌設한다. 孫子(亡人)는 祖父神位에 附하여 祭祀하고 孫婦는 祖母神位에 附하여 祭祀하고 祖父母가 生存하였으면 高祖父母에 附하여 祭祀한다. 節次는 曲設하고 먼저 曾祖父神位에 讀祝三獻하고 開飯插匙 正箸하고 考位에도 前과 같이 하되 闔門 啓門 獻茶 국공(鞠躬) 下匙箸 覆飯 辭神은 同時에 行한

다. (祝文別示)

⑮ 執 喪(집상)

父母喪은 三年喪이라 하여 滿二年間 喪主 노릇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父在母喪에는 滿一年을 執喪하여 왔다. 이 期間中 喪主는 罪人으로 自處하여 每事に 謹慎하고 喪服 또는 白衣를 입으며 다음과 같은 行事를 갖는다.

⑰ 上 食(상식)

每日朝夕에 食床을 마련하여 几筵(殯所의 祭床)에 올려 놓고 焚香하고 哭을 한다.

⑳ 朔 望(삭망)

每月初一日과 十五日에는 酒果 脯醢 其他의 飲食과 飯床을 特別히 마련하여 几筵에 차려 焚香하고 哭을 한다.

㉑ 小 祥(소상)

殯命後 滿一年이 되는 날 祭祀가 小祥이다. (祝文別示)

㉒ 大 祥(대상)

殯命後 滿二年이 되는 날 祭祀가 大祥이다. (祝文別示)

㉓ 埋 帛(매백)

大祥後 祭祀를 지낸 후 殯所에 모셨던 魂帛을 墓所앞에 묻는다.

㉔ 禫 祭(담제)

大祥後 三個月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祭祀를 지내는 것이 禫祭임(祝文別示)

㉕ 吉 祭(길제)

禫祭後 一個月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祭祀를 지내는 것이 吉祭이다. (祝文別示)

3. 喪中祭禮(상중제례—禫祭까지)

① 降 神(강신) .. 魂백을 모셔 강림토록 하는 것.

상주이하 참사한 前원이 곡을 시작하고 상주가 향탁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세번향을 피우고 일어나서 재배하고 다시 꿇어앉아 강신잔을 들어 상주 우측 접사자로 하여금 술을 반잔만 따르게 한 다음 모사에 세번에 나누어 따르고 잔을 제자리에 놓고 일어나 재배한다.

② 初 獻(초헌) .. 첫술잔 올림

상주가 다시 향탁 앞에 꿇어앉으면 왼쪽에 있는 접사자가 신위전에 있는 잔을 내려다가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받으면 오른쪽 접사가 주전자로 술을 따르고 왼쪽으로 접사가 다시 그 잔을 신위전에 올리고 밥 뚜껑을 열고 육적을 올리고 서병정저(西柄正筋)하고 참사자전원도 꿇어앉아 고개를 숙이면 축관은 상주동쪽(오른쪽)에 꿇어앉아 축을 읽음. 독축이 끝나면 상주는 곡을 하며 재배하고 참사원은 전부 일어나 곡하고 접사자

는 술잔을 물리고 잔을 씻어 빈잔을 올려 놓음. (술곡·소상·대상·기타
기제사 때에는 상주의 왼쪽 편에서 동향으로 꿇어 앉아서 축을 읽는데 축
을 읽을 때에는 전원 곡을 그치었다가 독축이 끝나면 다시 곡을 시작함.)

③ 亞 獻(아헌) .. 두번째 잔을 올림.

안상주가 잔을 드리되 초헌과 같은 절차로 하고 계책을 올리고 부인은
사배(형편에 의하여 안상주가 행사를 못하면 첫째 아들 손으로 하되 그렇
지 못하면 상주가 올림)가 끝나면 집사가 퇴주하고 빈잔을 씻어 올려 놓
음.

④ 終 獻(종헌) .. 세번째 잔을 올림.

아헌과 같이 함. 종헌 형제의 둘째 동생이나 가까운 인가가 하되 철주
(撤酒)하지 않고 여적을 올린다.

⑤ 侑 食(유식) .. 더 많이 흥취하도록 하는 것.

상주 또는 근친이 종헌 때 제주한 잔에 만잔이 되도록 첨작하고 나서 술
잔을 밥 그릇에 꽂고 첫가락을 잘 갖추어 그 시집 위에 자루가 집사자의
좌측으로 놓이게 함. 그 다음 첨작자가 재배하고 일어서면 전원이 곡을
그침.

⑥ 闕 門(합문) .. 상주 이하 전원이 밖으로 나오고 문을 닫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온 상주는 문앞에서 안상주와 서로 함하여 양수거
지하고 정숙하게 서있음. 참사원종 남자는 상주 뒤 여자는 안상주 뒤에
각각 양수거지하고 기다림. 노약자는 다른 장소에서 편히 있을 수 있으며

합문하는 시간이 예법에 一飯九食之頃이니까 지금 시간으로 四~五분 정
도임.

⑦ 啓 門(계문) .. 문을 열고 들어감.

축관이 「하렴」 소리를 세번하고 문을 열면 상주부터 전원이 들어가서
곡을 시작하고 집사자는 「경문」을 국을 놓았던 자리에 올리고 술잔을 뿔
아 세숫감을 떠서 물에 말아 놓는다. 참사자 전원 국궁(鞠躬)한다.

⑧ 告 利 成(고리성) .. 제사가 끝남을 고함.

참사 곡을 한 후 축이 상주 옆에 나아가 서서 읊을하며 「利成(이성)」을
고하고 상주는 읊하지 않으며 집사자는 손갈, 첫갈을 내려 시집에 놓고
메뚜정을 덮음. 一般吊問客 및 祭祀者는 告利成後 哭再拜하고 退席한다.

⑨ 辭 神(사신) .. 신위에게 절하고 제사를 끝냄.

상주를 위시하여 전원 재배, 부인은 사배하고 곡을 그침

4. 祝 文(축문)

祝文은 喪을 當했을 때부터 吉祭에 이르기까지의 祝만을 一括했다.

① 啓 殯 祝(계빈축) .. 棺을 들어 낼려고 할 때 着手前殯所에 告하는 祝

금이 吉辰전구갑고
今以 吉辰遷柩敢告

譯解 .. 이제 棺을 옮기려고 삼가 告하옵니다.

② 遷柩廳事祝(친구칭사축) 棺을 들어낼 때 읽는 祝
 請 친구우칭사
 遷柩于廳事
 譯解 棺을 밖으로 옮기기를 請하옵니다.

③ 祖奠祝(조전축) 發柩前夕에 祭祀지낼 때 읽는 祝

영천지예 영신불류 금봉구거 식준조도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譯解 永遠히 가시는 禮이오며 喪輿를 받들짚아오니 먼길을 인도하
 여주소서

④ 遷柩就輿祝(친구취여축) 棺을 옮겨갈 때 告하는 祝

금친구취여감고
 今遷柩就輿敢告

參考 妻나 弟以下는 『敢告』代身에 『敢告』라 쓴다.
 譯解 이제 판을 喪輿로 맞으름에 삼가 告하나다.

⑤ 遣奠祝(전전축) 發柩때 告하는 祝으로 發柩祝又是 永訣祝이라
 고도한다.

영이기가 왕즉유택 제전전례 영결종천
 靈輿既駕 往即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譯解 喪輿로 모시게 되었아오니 다음은 곧 무덤으로 가옵니다. 보
 내오는 禮를 배부오니 이제 永遠한 離別이옵니다.

⑥ 路祭祝(노제축) 運喪途中에 故人的 弟子나 友人 等이 故人的
 遺德을 追慕하여 올리는 祭의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모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吊問者姓名)

감소고우 모판모공지구
 敢昭告于 某官某公之柩 (吊問者가 故人的 德行과 事蹟을 찬양하는 內容
 을 쓰고) 尙 饗

譯解 前略 某는 敢히 某公의 靈에 告하옵니다. (故人的 德行業
 蹟等을 쓴) 肅穆하옵소서.

⑦ 山神祝(산신축) 開 塋城祝祠土地祝이라고도 하여 初終에 開土
 前 땅을 달은 神에게 告하는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 干支 某奉祀者姓名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모판부군 영전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
 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청작 포혜지천우 신상
 淸酌 脯醢祗薦于 神尙 饗

※ 塋城後祠土祝에는 營建宅兆를 定茲幽宅이라 함

譯解 某月某日 某는 土地 神에게 敢히 告하옵니다. 이제 이곳에
 某의 墓를 마련하오니 神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술과 脯와 醢를 올리오니 肅穆하소서.

⑧ 同岡先塋祝(동강선영축) 先祖의 墓附近에 墳墓를 쓸 때 先祖
 墓에 올리는 祝

유세차(太歲) (月建) (朔日辰) 고자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판부군지묘 금위 모판부군 영전택조 우모소 근이 주과용신 진고근고
 顯考某官府君之墓 今爲 某官府君 營建宅兆于某所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參考..某所亡墓의 左域은 右便位置를 말하며 營建宅兆于를 先葬이 合葬한 境遇에는 合葬于라 쓴다.

譯解..(前略)某는 敢히 告하옵니다. 某의 墓를 이제 某公의 墓所가 제신 某處에 모시게 되었아옵기 삼가 酒果로 敬進히 告하옵니다.

⑨ 雙墳祝(쌍분축) ..母親이 먼저 別世하시고 뒤에 父親이 別世하시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애자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哀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비모봉모씨지묘
顯妣某封某氏之墓

선고모판부군 불행어 모월모일
先考某官府君 不幸於 某月某日

연세예당합부이 연운 유구장용 쌍분지제 호친망극 근이 주과용신 건고
捐世禮當合附而 年運 有拘狀用 雙墳之制 昊天罔極 謹以 酒果用伸 虔告
근고
謹告

參考..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先考를 顯考라 고쳐 앞줄에 쓰
고 顯妣를 先妣라 고쳐 뒷줄에 쓴다.

譯解..(前略)某는 敢히 어머니의 墓에 告하옵니다. 아버지께서 不幸히 돌아가시니 마땅히 合葬하여야 하오나 年運이 맞지 않아 雙墳의 制를 씁니다. 아버지의 恩惠가 넓고 하늘과 같으니 삼가 酒果로 敬進히 告하옵나이다.

⑩ 返魂祝(반혼축) ..埋葬을 끝내고 城墳하였을 때 返魂前 墓에 告하는 祝으로 祭主祝 또는 成墳祝 平土祝이라 한다.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형귀문석 신반신당 신주미성 부유
顯考學生府君 形歸窆窆 神返室室 神主未成 伏惟

尊靈 혼상유존 영구시의
尊靈 魂箱猶存 仍舊是依

參考..母喪에는 『孤子』代身에 『哀子』라 쓰고 父母俱歿이면 『孤哀子』라 쓴다. 妻, 弟以下에는 『伏惟』를 쓰지 않고 『尊靈』代身에 『惟靈』이라 쓴다.

譯解..(前略)某는 아버지께 告하옵니다. 肉身은 무덤속으로 가셨사 오나 靈魂은 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아직 神主를 만들지 못하였 아오나 魂帛兩이 있어오니 尊靈은 옛과 같이 여기에 의지하시옵소서.

⑪ 初虞祝(초우축) ..返魂後 처음으로 지내는 祭의 祝文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초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휴사상
飭事 尚 饗

參考..『孤哀子』返魂祝의 境遇와 같이 區分하여 쓴다. 『夙興夜處 哀慕不寧』은 兄에 告할 때는 『悲痛無已 至情如何』라 쓰고 妻에게 告 할 때는 『悲悼酸告 不自勝堪』이라 한다.

譯解..(前略)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初處가 되었습니다. 밤과 낮 으로 술이 思慕하여 편할 수가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飮食으로 祭祀를 올리오니 肅敬하소서.

⑫ 再處祝(재우축) .. 返魂後 첫날 아침 祭祀의 祝 즉 乙丁巳辛癸日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재우 숙흥야처 애모불영 근이 청작서수 애천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再處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우사상 향
虞事尙 饗(解 初處祝參照)

⑬ 三處祝(삼우축) .. 返魂後 첫날 아침 祭祀의 祝 즉 甲丙戊庚壬日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삼우 숙흥야처 애모불영 근이 청작서수 애천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三處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성사상 향
成事尙 饗(解 初處祝參照)

⑭ 卒哭祝(졸곡축) .. 三處後 三個月 以內에 지내는 祭祀의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판부군 일월불거 엄급졸곡 숙흥야처 애모불영 근이 청작서수 애천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성사상 향
成事尙 饗

譯解..(前略)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언 卒哭의 때가 되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술이 思慕하여 편할 수가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몇가지 飮食을 올리오니 肅敬하소서.

⑮ 耐祭祖考位祝(부제조고위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효曾孫모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 孝曾孫某
근이 청작서수 적우
謹以 清酌庶羞 適于

현증조고 모판부군 제부손 모판부군 상
顯曾祖考 某官府君 隋附孫 某官府君 尙 饗

⑯ 耐祭新主祝(부제신주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효子모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 孝子某
근이 청작서수 애천부사우
謹以 清酌庶羞 哀薦附事于

현고 告母 모판부군 적우
顯考 同前 某官府君 適于
현증조고 모판부군 상
顯曾祖考 某官府君 尙 饗

①7 小祥祝(소상축) .. 死後 一年 忌日에 지내는 祭의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記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판부군 일월불거 업급소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상사상
常事尙 饗

譯解.. 卒哭祝參照

①8 大祥祝(대상축) .. 死後 二年 忌日에 지내는 祭의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記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판부 일월불거 업급대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상사상
常事尙 饗

○ 小大祥 및 담제(禫祭)를 집한 축문식

최근 의례 잔소와 올동으로 慶祭를 약하기도 하고 소상 대상 그리고 담
제를 일시에 병행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祝式은 다음과 같
다.

維歲次甲子 三月乙丑朔 初三日丙寅 某 敢昭告于

顯考學生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쓴) 府君 日月流邁

奄及忌日 時代遷易 隨於風潮 大小祥祭

又兼禫祭 一時並行 祭禮違序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

①9 禫祭祝(담제축) .. 大祥 三個月 後에 丁日 또는 亥日을 擇하여 지
내는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효자모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孝子某(奉記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판부군 일월불거 업급담제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禫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담사상
常事尙 饗

②0 吉祭祝(길제축) .. 吉祭는 禫祭後 一個月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지
내는 祭의 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오대손 모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五代孫某(奉記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오대조고모판부군
顯五代祖考某官府君

현오대조비모봉모씨 자이 선고 모판부군 상기이진 선인제례 사지사대
顯五代祖妣某封某氏 茲以 先考 某官府君 喪期已盡 先人制禮 祀止四代 心

수무궁 분축유한 신주당조 천우정침 불송간창 근이 청작서수 백배고사
雖無窮 分則有限 神主當祀 遷于正寢 不勝感愴 謹以 清酌庶羞 百拜告辭

상사상
尙 饗

參考.. 吉祭는 先代 祖上에 지 告祀를 하고 亡靈에 비로소 祭祀에 參

禮하는 祭祀이다. 吉祭는 父親이 別世해서 解喪되면 五代祖 考妣는 祭祀를 마치고 墓祀에 옮겨지는 節次의 祭祀이다.

解譯..(前略)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喪期가 다 되었으므로 神主를 옮겨 神堂에 모시려고 하옵니다. 사당 제사는 四代이온즉 高祖 考祠의 神主를 將次고쳐 쓰겠으므로 代數의 차례가 옮겨지게 됨에 슬음을 이기지 못하여 酒果로 삼가 告하옵니다.

② 妻喪練祭祝(처상연제축): 妻死亡後 十一月에 終祭하고 十三月에 終喪

유세차(太歲)(朔日辰)(日辰)부모 소고우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夫某(男便姓名) 昭告于

당신유인모관모씨 일월월거 엄급연제 비도산고 불자승감자
亡室孺人某官某氏 日月不居 奄及練祭 悲悼酸苦 不自勝堪 茲

이 청작서수 진차전의 상 향
以清酌庶羞 陳此奠饌 尚 饗

譯解..(前略) 남편 某는 돌아가신 아내 某官某氏에 告하옵니다. 歲

月이 흘러 어언 練祭를 맞으니 슬프고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밝은 술과 몇가지 제수를 베를어奠을 올리니 흠참하

옵소서.

5. 吊 問(조문)

옛부터 경사에는 親不親問에 초청이 없으면 參席하지 않으나 초상이 나면 亡人이나 喪主와 知面이 있으면 訃告가 없더라도 조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곳에 따라 成服前後나 內外艱喪(내외간상)에 分別없이 哭拜吊問하는 例가 많다. 勿論 그 地方 慣習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으나 成服前後를 구별하여서 吊問을 하면 큰 실수는 없을것이다. 一家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초상을 당하면 「喪主의 活動이 極히 制約을 받으므로」 喪家에 가서 襄禮 接賓客準備等 必要한 일을 도와 주어야 한다. 가까운 일가 친척이 없으면 친구들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① 成服前吊問(성복전 조문)

成服前이라 함은 大殮이 끝나기 前을 말하며 成服前에는 亡人에게 拜禮도 안하고 喪主에게 呼哭吊問을 얹는 것이다. 상주에게만 인사를 하고 위로하는 것이 禮이다. 그래서 成服前吊問을 回春人事라고도 한다.

② 成服後 吊問(성복후 조문)

成服禮는 大殮이 끝나면 殯廳을 차리고 魂帛을 모시어 놓고 喪服을 갖추어 입고서 제사지내는 일을 成服禮라 한다.

成服禮가 끝나면 비로소 吊客들은 亡人几筵(魂帛)에 呼哭再拜를 하고 喪主에게 相對對哭後 서로 접하고 慰辭를 한다. 대개 보면 吊客이 상주에게 먼저 절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吊問을 와주어서 고마움다는 뜻으로 喪主가 절하는 것을 吊客은 答禮하는 것이니 受動的이어야 옳다. 禮文에도 明示되어 있으니 留意하기 바란다. 또 내간상 吊問에는 亡人과 知面이 없으면 几筵에 呼哭再拜를 얹고 喪主에게만 吊問하는 法이다.

③ 親戚間 吊問(친척간 조문)

一家間에는 內外艱喪 구별없이 几筵에 行列에 따라서 呼哭再拜하고 喪主와 인사한다. 다만 親戚間手下人 几筵에는 坐哭 無拜이며 膊奠이 있으면 他人으로 하여금 술한잔을 붓게 하여 揖(음)하고 물러난다. 手下라도

나이가 비슷한姪行의 几筵이면 再拜한다.

他人의 吊問은 원래는 成服以前에는 안하며 成服後에 해야 옳다. 喪無二主라는 말이 있다. 喪主와 吊客이 서로 對哭人事하고 그 지차들은 稽顙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 喪主에게만 問喪하는 것이 아니므로 支次喪主들도 吊客에게 인사를 해야 옳다.

④ 喪主로서 他人과 人事할 때

초상때가 아닌 평소에도 三年 喪안에는 吊問客이 있으므로 집안에서는 喪服을 입고 손님을 맞아 對哭人事한다. 출입할 때 옛날에는 喪服에 平素의 것 대신 방일을 쓰고 다녔으나 近來에는 出入할 때의 服飾에 掛念한 필요가 없다.

⑤ 其 他(기타)

喪主와 親하고 亡人과도 知面이 있을 때

几筵에 들어가서 呼哭再拜 하고 喪主와 相向對哭한 후 人事한다.

喪主와는 親하나 亡人과는 知面이 없어도 內艱喪外에는 几筵에 呼哭再拜하고 喪主와 相向對哭後 人事한다.

他人의 內艱喪에 吊問할 때(親舊도 同)

生存時 喪親인사가 있으면 几筵에 呼哭再拜하고 喪主와 相向對哭

人事하며 그렇지 않으면 喪主와만 相向對哭인사한다. 死後相面禮가

없기 때문이다.

亡人과는 親하나 喪主와는 知面이 없을 때

几筵에 들어가 呼哭再拜하고 喪主와도 人事한다.

원칙은 几筵에 哭拜하고 바로 外堂으로 나와 있으면 喪主가 찾아가

서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喪主와 인사하고 망인과의 관계를 說明하여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查夫人 几筵 吊問 때

平素相面有無를 가릴 것 없이 几筵 밖에서 喪主와만 相向對哭人事한다.

親舊妻喪 吊問할 때

親舊에게 먼저 인사하고 苦席에 들어가 喪主와 相向哭拜하고 人事한다. (几筵에는 哭拜하지 않는다.)

6. 吊 辭(조사)

吊客이 먼저 几筵에 哭하고 再拜한後 喪主와 拜禮하고 鄭重한 言辭로 「喪事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하고 말하면 喪主는 「罔極 하오이다」하고 對答한다. 弔客과 喪主가 인사하는 몇가지를 例擧하면

弔客(조객) 病患이 심하시드니 回春을 못하시고 喪事까지 當하시니 오죽이나 罔極 하겠습니까.

喪主(상주) 罔極하기 限이 없습니다.

弔客(조객) 春秋 높으셔도 恒常 健장 하시드니 오죽 애통하시겠습니까.

喪主(상주) 侍湯을 게을리 하지는 안했지만 罔極하기 그지 없습니다.

註解 几筵 혼백을 모시는 靈座. 苦席(정석) 거처자리 초상이나고 成服後 喪主가 앉은 거처자리. 成服 亡人을 大斂入棺하고 喪服을 完全히 갖추어 입는 것을 말함. 相向對哭 서로 마주보고 哭하는 것. 揖은 손을 마주잡고 水平程度로 圓을 그리듯 턱 밑까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허리를 약간 구부리는 옛날 전·稽顙 꿇어앉아 이마가 고침에 닿도록 숙이는 것.

賻儀書式(부의서식)

註：賻儀는 喪家에 扶助하는 것으로서 小大詳에는 香奠이라고 씁。喪家에 必要한 物品(主로 香 麻布 漢紙 舍隣近이면 粥 吊花 金貨等)을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이 物目數量을 記錄하여 보내는 것이 禮에 맞는다.

賻 儀
麻 布 壹 匹 漢 紙 壹 卷
花 環 一 雙 金 貨 五 千 圓
年 月 日 某 汗 呈
某生員 護喪所 入納

外	內
賻 儀	住 所
某 生 員 護 喪 所 入 納	姓 名 謹 呈

四、祭 禮(제례)

제례라 함은 始祖以下 先代 先조들을 추앙(推仰)하는 여러가지 儀式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高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형제와 배우자 기타 친족을 추모 또는 추도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날에 혹은 四時名節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1. 祭祀의 由來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옛날 사람이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천제 지변이나 또는 사나운 맹수 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늘과 땅신수(深水) 거목(巨木), 높은 산, 바다, 조상들에게 절차를 갖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즉 제사가 발생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 변화나 어떤 공격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져 온 제사는 중세와 근세에 와서는 차츰 유교적인 조상숭배의 제도로 변화하였으나 그 대신 유교적인 번잡한 절차와 자연 숭배의 미신적인 의식이 높아지므로 가정마다 연간 제사를 지내는 회수는 무려 四八회 이상이나 되었다. 祭禮는 喪禮와 마찬가지로 그 儀式節次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自古以來로 儒學者나 禮文家사이에서 갑론을박의 논쟁이 많았을 정도 이었다. 그런데 祭禮를 記述하기에 筆者는 너무나 蔑學이다. 잘못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汗出沾背의 重責을 느낀다.

2. 祭禮範疇(제례범주)

喪禮와 祭禮에는 말도 많고 形式節次도 가지가지이다. 옛날에는 이 論亂으로 朝廷政事가 어지러워졌고 學者와 신비들이 접잡치 못하게 派黨을 지어 生死를 정은 싸움질까지 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朱文公家禮는 우리나라 四禮의 母體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못하리라.

家禮에는 朝夕上食에 不用酒라 하였고 東儒의 退溪말씀은 有酒어든 獻一酌이 可라하였고 上食에 立哭이요 無拜는 孝子之於親에 每晨唱飭而無拜故로 不忍以神事之故也라 하였는데 但 朔望에는 보통상식과 달리해서 設奠을 하므로 獻一酌하고 再拜하고 辭神에 재배한다. 상주가 葬前에는 獻酌을 他人을 시켜 代奠하는 것은 葬前不盥洗가 禮有明文이므로 불결한 것을 꺼려함이라 하였다. (沙溪所言) 魂帛은 비단으로 同心結을 맺어서 葬禮前에 영혼이 의지할 곳을 만드는 것인데 下棺後에는 壙中에 埋安하는 것이며 宋尤庵은 同心結이 上古時代에 淫男淫婦가 情表하는 매듭이라 해서 전한 것이라 하여 폐지시키고 細布로 四通不通으로 집도록 하였는 것이다. 假主는 밤나무로 神主를 만든다. 上古時代에는 尸重이라고 七, 八歲된 어린이를 신위로 앉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나무로 만든 신주로 대신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밤나무로 造主를 아니하고 白紙를 木主와 같이 집에서 글씨를 써서 神位로 모시는 것도 假主라 한다.

右가 東이니 東高西卑라 해서 생전에는 男右女左로 設席이 되고 死後에는 西高東卑로 男左女右가 되니 그 이유는 日月出沒이 以東爲始故로 陽界에는 以東爲首하고 山水之勢는 西下東向故로 陰界에는 以西爲上이다. 禮文에 祖孫이 不同杖이라 하여 承重상에 曾祖가 생존이시면 無杖이요 父

喪에 祖父께서 생존이시면 有杖이지만 同途에서는 執杖하지 않는다.

四四

祭飯을 通稱「메」라고 하는 데 이 말은 인도나 라 말이다. 佛教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佛前에 올린 밥을 「메」라 하였기 때문에 祭祀에 올리는 밥도 메라고 해서 公廟어가 된 것이며 日本에서 밥을 「메시」라고 할을 고메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건너간 말이다. 宗婦가 만일 親家父母의 상복을 입었으면 제사날에 임시로 옥색 옷을 입으라 하였다. 考妣位를 各單設로 해서 한분만 제사하는 집도 있고 合設해서 내외를 함께 지내는 집도 있으나 單祭는 禮之正이요 合祭는 禮之情이라 하였으니 單祭나 合祭가 모두 좋으며, 大多數가 合祭하고 있다. 東儒說에 墓所에 節祀가 不可하다고力說한 분들이 많은데 그 答辨에 顔子使於諸侯라가 返國墓墓而入。라 하였으며 春秋戰國時代에도 墓祭가 있었고 孟子에 東郭播間之祭에 醉飽而歸라하는 말이 있으니 六國時代에도 있었으며 張良의 子孫이 於穀城에 並祀黃石이라 하였으니 西漢時代에도 있었고 漢武帝令諸將으로 賜小字祭墳墓라하니 自古로 墓祭가 있었던 일이다.

栗谷은 말하기를 焚香과 降神에 合해서 한번만 재배하고 祭神에 在位者皆再拜無妨이라 하였다. 禮文에는 再不焚香인 즉 분향은 情神이니 降神時에 한번만 하고 헌작시 마다 분향은 못 쓴다 하였다. 禮論者들이 先祭神後降神이니 先降神後祭神이니 하는 理論이 있으나 行祀時에 龜室에서 出主할 때에 龜室門을 열고 先再拜한後 出主하는 것을 先祭神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해서 祭神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影幀(영전)에는 표시만 하고 祭祀가 없다는 主張도 있으나 家禮增解에 보면 朱子도 於長子影幀에 每致典에 不盛設하였다는 文句가 있으니 影幀에도 致祭無妨이다. 尤庵은 「平素時之物은 不可全廢니 三年喪內에는 狗肉

山菜라도 用之無妨이라 하였다. 祭有不淨하니 초상이 났을 때 葬前이면 祭祀를 지내지 않고 廢祭하고 아기를 낳을 때 產故는 三日以內이면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各居할 때는 상관이 없다.

明齋는 말하기를 始祖祭祀에는 賜姓關係로 姓이 달라지기도 하나 祝(祀) 文에 初獻官의 姓名을 쓰는 것이 可하다고 하였다. 山神祭는 반드시 祭祀徹床과 同時에 지내는 법이나 一崗에 累代墓所가 있으면 各墓祭祀를 마친 뒤에 最高位墓左便에 設席하고 지내라고 하였으며 墓祀보다 먼저 山神祭를 올리는 것은 妄說이라 하였다. 그러나 墓所距離가 떨어져 다시 祭物을 갖추어 돌아가기가 어려운 곳은 元位(最高) 祭祀를 마친 직후에 올리는 것도 無妨한 것이다.

山神祭에 先土祭니 後土祭니 하는 論難이 있으므로 禮文을 移記하여 둔다. 「朱文公家禮」에는 「祠土地 按朱子大全集有四時祭大夫墓祭 祭後土則時祭祭土地 亦禮之宜也 今擬祭儀於後」 그리고 四禮의 墓祭儀에는 「墓上每分如時祭之品更設魚肉米麴食以祭後土」라고 記錄되어 있다.

山神祭는 自己 宗상의 永世를 依托한 山神에게 感謝를 드리는 同時에 또 앞으로의 守護도 仰請하는 意味가 있어서 옛 부터 先土祭後土祭를 論難하였을 만큼 重要한 祭祀이다. 그러므로 元位山所 上部左便에 터를 닦아 두는 것이 通例이며 그 行祀도 반드시 祭主가 올리고록 하고 다른 祭官에게 代行시켜서는 缺禮이며 또 祭需도 몇 가지를 간략하게 陳設함은 더욱 잘 못이다. 禮文에는 「每分如時祭之品更設……」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宋同春이 金沙溪한데 後土祭를 墓祭前에 지내는 것이 어떻냐고 물으니 金沙溪는 「나는 우리 先祖歲薦에 墓祭에 正성을 다하고 있는데 墓祭後에 後土祭를 지내는 것이 옳은줄 믿으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제

시니까 그렇소라고 하였고 또 遜愚는 말하기를 「옛 부터 五祀의 禮制가 모두 그곳 神에게 먼저 지내는 데 어찌 先土祭만 다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祖先을 保護하여 주고 있는 土神이니까 墓祭에 앞서 土祭를 올려야 옳다」고 하였다.

이 두가지 主張이 서로 相反되지만 여기에 그 原文을 남겨 두니 參考하여 주시기 바란다.

宋同春問於金沙溪曰祀后土如何墓祭之前沙溪曰吾爲吾親薦歲事專誠在於墓祭土神自宜後祭蓋有吾親方在是神又遜愚曰古在五祀之制凡祭皆先祭於其所然後迎尸而祭之五祀尙然況後土是吾祖先托禮之主先墓而祭之兩說不同並記之以備參考

先土祭는 앞에서 墓祭置後에 올리고 墓祭때와 같은 祭需를 쓰고 또 祭主가 直接 올리는 데 焚香은 않는다는 兩說이 禮書에 있으니 參考하기 바란다.

3. 祭祀의 種類

祭禮가 까다로운 程度만큼 그 種類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正月元日과 秋夕(八月十五日)의 茶禮或云節祀를 비롯한 중삼(三月三日), 단오(五月五日), 유두(六月十五日), 추석(八月十五日), 중양(九月九日)冬至等 世俗節祀가 있고, 또 墓祭로 한식(清明日)과 十月에 五代以上墓所에 올리는 歲一祀(時享)인 墓祭 그리고 五代以下의 忌日에 올리는 忌祭等이 있으며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大祭는 春夏秋多四時節의 가운데 달(仲月)에 올리는 時祭라 하겠다. 家禮에는 「孟月下旬之首擇仲月三旬各

一日或丁或亥日이라 했고,冬至祭先祖는「程子曰此厥初生民之相也冬至一陽之始故象其類而祭之」라 하였고,立春祭先祖는「立春生物之始故象其類而祭之」季秋祭穰是「季秋成物之始亦象其類而祭之」라 하였다. 그러나 大祭라고 하는 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時祭 다음으로 重要的한 제사가 忌祭이다. 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遷祧가 된다. 그러므로 忌祭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三촌 이내의 존속 등 喪親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忌祭를 지낼 수 있다.

忌祭(忌祭)는 고인이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모를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진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忌祭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써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다.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 해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조 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전심으로 그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리움에 생각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세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 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게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忌祭를 지내야 한다.

3촌 내의 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 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 친족에 대한 정(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儀式은 어느 나라이고 다 있다.

우리 나라의 제제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歷史에 나타난 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年二월에 圖隱鄭夢周先生的 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는 대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三代, 六品이상은 二代, 七品이하와 일반 서인들은 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 이상의 四代, 六品이상이 三代, 七品이하는 二代, 일반 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에는 전제군주제도로써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 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萬 미만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忌祭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부모 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당대만의 忌祭를 지내 오면 민족이 한말(韓末)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 사회가 무너지는 덕분에 모든 사람이 사대부 양반이 되어 보고 싶어서, 士大夫의 행세를 한탄 하여보고 싶어서, 너도 나도 四대봉사를 하였던 것이다. 家庭儀禮準則의 二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依據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4. 忌祭日(기제일)

忌日은 諱日이라고도 하며 故人이 別世한 날을 말한다. 別世前날이 入祭日 別世한 날이 忌日 그 다음날이 罷祭日이다. 大祭(時祭)는 三日齊戒를 하고 廟・墓祭에는 二日, 忌祭에는 一日齊戒이다. 入祭日에는 祭主와 主婦가 沐浴齊戒하고 飲酒를 삼가하며 歌舞를 禁하고 喪家에 問喪도 안가는 法이며 집안을 깨끗이 淸掃하고 故人의 生存時를 懷想하면서 追慕하는 法이다.

5. 忌祭時間(기제시간)

禮文에는 別世한 날 子時에 祭祀를 지낸다고 되어있다. 厥明祭니 質明祭니 한다. 厥은 其也요 質은 成也니 厥明하면 未明이요 質明하면 明을 이루 무렵이다. 그러니까 子正(零時)부터 寅時(五時)까지 날이 새기前 새벽에 忌祭를 올리는 것이 禮이다. 神道는 陰이라 하여 늦 밤중에 活動을 하며 닭소리가 나기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禮文에도 없는 迷信의 인 헛소리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子時)에 忌祭를 올려야 한다는 厥明行祀의 禮文精神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故人의 제사부터 올리는 精誠을 強調한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社會構造와 生活與件에서 볼 때 한밤중 제사는 核家族化되어서 分散居住하는 家族들의 參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날 出勤과 活動에도 지장이 많게 된다. 그래서 家庭儀禮準則을 보면 別世한 날 日沒後 적당한 時間에 지내게 되어있다. 저녁 때라면 사업하는 분이나 會社에 勤務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祭官들이 모이기 좋은 時刻이어서 都市에서는 저녁 八時・九時사

이에 行祀하는 집안이 大部分이며 또 缺禮도 아니라고 본다.

종래에는 가정에서 생황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지나친 것이다.

6. 祭 主(제주)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재한다. 상친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즉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參祀者(참사자)

기제사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매년 추모하는 의식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가까운 친척들만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먼 타지방에 출장을 하였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간쯤 해서 여행지에서 묵념으로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한다.

종래의 관습으로는 기제사 날이 되면 멀리 출타했던 사람도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며, 집에 있는 사람은 말을 타거나 가까운 거리라도 외출하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손님도 받지 않고 금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생활여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가계(家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 고인의 영혼도 그렇게 반가워 하지 않을 것이다.

8. 行祀方法(행사방법)

기제는 單設과 合設이 있는데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사 방법은 고인의 내외분을 합계 모시는 것을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또는 그날 별세하신 한 분만을 모시는 것을 단설(單設)이라고 한다. 부부는 일신이라는 말과 같은 정분을 보더라도 당연히 합설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며 또 지금 대부분이 合設하고 있다. 종래에는 가가예문(家禮文)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가정의 예의 절차와 형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이다. 그 원인은 이조 시대의 사색당쟁(四色黨爭)으로 각파 간에 다른 파에서 하는 절차대로 따라할 수 없었다 하여 그 나름대로 조금씩 바꾸어서 달리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제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봉사 방법이나 제물을 전설하는 형식도 각각 다르게 했기 때문에 축답에 「남의 제사에 감동이라 배 놓아라 하고 참전말라」 등의 풍자적인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합설할 경우에는 제상을 두 분 따로 차릴 것이 아니고 한 제상에 몇 밥과 잔만 두 분 것을 따로 올리면 된다는 禮文이 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제사는 四대를 뒷분부터 차례로 지내 왔으나 지금은 四대를 합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합설하려면 뒷 어른을 왼쪽에서 차례로 모신다. 혹은 아랫분은 곡설(曲設)하여도 무방하다.

9. 神 位(신위)

신위는 고인의 지방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한다. 신위(神位)라 함은 고인의 영혼 즉 신을 모시는 곳을 말한다.

기제사의 본 뜻이 고인의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의식이라고 하였으니 그 추모하는 정을 제대로 고취시키려면 고인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사진을 모시는 것이 禮에 없다고 하여 탓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별세하신지 오래 되어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을 쓰겠지만 생전에 사진 한 장씩은 꼭 찍어 두었다가 앞으로 별세하시는 분에 대해서 는 상례의 영좌와 제사의 신위만은 사진으로 모시도록 하였으면 한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저한 유교 의식에 따라서 위호(衛護)라고 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집집마다 사당(祠堂)을 짓고 역대 조상들의 신주를 모시고 수많은 제사를 지내야 하였으나 지금은世上살이가 많이 달라졌으니 世俗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종이에 쓴 지방 보다는 사진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10. 紙 榜(지방)

제사 지낼 때에는 紙榜을 쓰는데 지방이라는 것은 고인의 신위표시를 말 하는 것으로서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분은 紙榜이 必要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흰 종이에 위에 작고 하신분의 호칭과 판직을 먹으로 정성껏 써서 祭床正後面벽쪽에 부친다. 紙榜길이는 周尺으로 一尺二寸幅이 三寸인바 周尺一尺은 現미터 법으로 約二十厘米에 該當하니까 길이가 二十二センチ에 넓이가 六センチ 정도이다. 紙榜쓰는 方式은 다음에 例示한다.

11、紙榜書式

高祖父母의 境遇

顯高祖妣貞夫人某封某氏 神位
顯高祖考資憲大夫吏曹判書府君 神位

曾祖父母의 境遇

顯曾祖妣淑夫人某封某氏 神位
顯曾祖考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府君 神位

祖父母의 境遇

顯祖妣淑人某封某氏 神位
顯祖考通訓大夫行敦寧府都正府君 神位

父母의 境遇

顯妣孺人某封某氏 神位
顯考學生府君 神位

伯父母의 境遇

顯伯母孺人某封某氏 神位
顯伯父學生府君 神位

叔父母의 境遇

顯叔母孺人某封某氏 神位
顯叔父學生府君 神位

兄의 境遇

顯兄嫂孺人某封某氏 神位
顯兄學生府君 神位

弟의 境遇

故弟某官○○(名) 神位

妻의 境遇

故室孺人 某封某氏 神位

夫의 境遇

顯辟學生 府君 神位

子息의 境遇

故子某官○○(名) 神位

●死後에는 西高東卑라 左便에 考位(男) 右便에 妣位(女)를 쓴다.
●「考」는 父와 같은 뜻으로 生時에는 父라 하고 死後에

는 考라 하며 祠堂에 모실 때에는 禰라고 하며 妣는 母와 같다 生時에는 母 死後에는 妣라 한다.

● 故人에 官爵이 있으면 學生代身에 官爵을 쓰고 夫人의 呼稱도 달라진다.

● 妻祭에는 子息이 있어도 夫가 主祭가 된다.

● 子의祭에는 孫子가 있어도 父가 主祭가 된다.

12、祝 文(축문)

축문(祝文)이라 함은 제사를 지내는 데 고인을 추모하는 뜻을 써서 제사를 올릴 때 신위에게 고하는 글을 말한다.

축문은 깨끗한 창호지나 또는 모조지에다 붓으로 정성껏 써야 한다. 그 쓰는 방법과 例文은 별도로 收錄한다.

13、祝 板(축판)

축판은 祝文을 놓고 읽는 판으로서 축문과 같은 크기의 받침판을 말한다.

14、祭 服(제복)

제복은 제사를 올릴 때 입는 복장으로 깨끗한 평상복을 정장으로 갖추어 입으면 된다.

평시에 입는 옷이라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어야 하며 양복을 입을 경우 우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상의를 입어야 하며 한복을 입을 경우 우에는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한다. 그 위에 도포(道袍)를 입고 유전(儒巾)

을 쓰면 더욱 엄숙하게 보이며 마음도 저절로 엄숙하여 진다.

15、行祀節次(행사절차)

祭祀 지내는 順序라 함은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그 방법을 말한다.

첫째, 신위봉안(神位奉安)

고인의 신위를 제청(祭廳)에 모시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사진이나 지방을 제상 후면에 모신다.

참고...先參神 後參神이나.

神主를 모시고 祭祀지낼 때는 參神을 먼저 하고 降神을 뒤에 하며 紙榜을 모시고 祭祀지낼 때는 降神을 먼저 하고 參神을 뒤에 한다는 明文이 四禮에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하며 墓祭만은 參神을 먼저 하고 降神을 후에 한다.

16、茅 沙(모사)

미 한줌을 八寸쯤 잘라서 불은 싼로 中間을 묶어서 정결한 모래를 담은 (모래가 없을 때에는 술 지점이나 팔로 代하여도 可) 대접속에 세운다.

그런데 미와 모래를 쓰는 의미를 禮文에 이렇게 쓰여 있다. (四禮便覽)

(會通註) 曰截茅一握束以紅絲立沙中(周禮註) 曰必有茅者謂其體順理

直柔而潔白承祀之德當如此也(尤庵) 曰紅欲其文沙欲其淨也

(家禮附註) 截茅八寸餘(周尺一寸約二握) 作束以紅立于盤

17、祝 板(축판)

축을 놓고 읽는 板으로 四禮에 그 規模가 기록 되어 있다. (祭禮祭具) 家

禮本註：長一尺廣五寸

18, 神 主(신주)

신주는 신주 받침틀과 신주로 구별 되는데 그 規格을 禮文에서 옮겨 써 둔다.

(家禮本註)曰「跌方四寸二分(周尺)鑿之洞底以受主身身高尺二寸博三寸厚寸二分判上五分为圓首寸之下勒前爲額而判之四分居前入分居後額下陷中長六寸廣一寸濶四分合之植於跌下齊數其旁以通中圓徑四分竅居三寸六分之下距跌面七寸二分」

祠堂이 없는 家庭에서는 神主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제사날에 白韓紙에 붓으로 故人的 呼稱(父면 顯考 母면 顯妣)과 그 官職을 써서 붙이고 祭祀를 올리는 데 그것을 紙榜이라고 한다.

19, 祭 需(제수)

제수(祭需)라 함은 제사에 차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正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正성의 표시는 물질로써 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正성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제수는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성찬으로 차리기 보다는 淸상시 亡人이 즐겨하는 음식 또는 가정에서 먹는 반상 음식으로 깨끗하게 차려 正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번거로운 의식 절차로 행하는 것만의 의례로 여겼던 옛날의 성현 말씀도 마음을 다한 것이 제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물질로만 다한 것은 가

장 잘못된 제사이다 라고, 하였다. 祭文에 盡心者祭之本, 盡其物者祭之末이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이며 物質로만 때우려드는 것은 잘못된 제사라고 하였다. 또 栗谷은 曰果用五品貧不能辦則三品亦可湯用五色(或肉或魚或菜隨其所備)而貧不能辦則三色亦可炙用三色(肉炙魚炙雉炙或鷄炙)이라고 말 하였다.

20, 陳設(진설) 및 設位(설위)

祭需陳設에도 말이 많다. 여복해서 남의 제사에 꽃갑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는 말이 나왔으며 한술 더 떠서 짝아 놓아라 굴러간다는 諷刺까지 생겼을 程度이다. 大漢韓辭典에 棗를 찾아보면 棗東栗西라고 收錄되어 있으나 禮文에는 없는 말이다. 또 紅東白西라 하나 이것도 모를 소리다. 禮文에는 棗西栗東次而已라 이 實果陳設이 恒時말이 많다. 棗栗梨柿니 紅東白西니 하고 論爭하나 果實도 造果도 그 數와 色상이 옛날과 只今은 많은 變化가 있고 보니 紅東白西로 하여 造果를 按配陳設함이 錯을 줄안다. 退溪는 魚東肉西로 生東熟西와 炙有三種(魚肉雉)이며 魚肉은 天産이라 陽이니 奇數요 果穀은 地産이라 陰이니 偶數라 若家貧難辦則依陰陽數하여 減品도 未有不可라 하였다. 雉炙은 鷄炙으로 代行한다. 또 沙溪는 喪禮備要의 陳設圖는 板本の 誤也라 하였고 退溪는 墓祀에는 進饌禮가 없으나 飯羹不用도 無妨하다고 하였지만 龜峰은 原野禮에도 飯羹이 있으니 飯羹을 아니써서는 안되며 終獻때 啓飯蓋하고 插匙後에 俯伏하라고 하였다. 陳設要領의 左가 西요 右가 東이다. 따라서 祭床의 앞이 南이 되고 뒤가 北이 된다. 南에는 祭卓 앞 中央에 香卓을 놓고 그 東便에 酒樽床 西便에 祝板床을 놓는다. 香卓위에는 後面中央에 茅沙를 놓고 그 뒷술에 盒東爐西로 香

忌祭陳設圖

考位 妣位
아버지 北 어머니

※이 陳設圖는 朱文公 單設과 程子家禮의 考妣合設과 栗谷陳設圖等을 參考로 復合編制한 것이다. 家勢에 따라서 祭需을 차려야 한다.

主人之左

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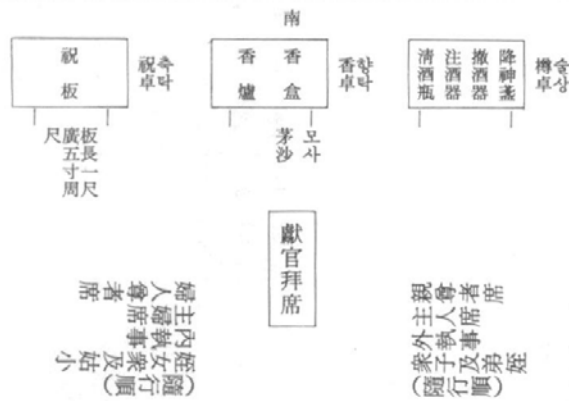


主人之右

東

忌祭陳設圖

神位 모신 곳이 항상 北이 되고 拜席은 南, 마라보고 左便이 西右便이 東, 飯臺 羹이 一行, 麵炙餅이 二行, 湯이 三行, 蔬菜, 脯醢가 四行, 果實이 五行이다.



火爐並爐煮

鹽洗器

盒과 香爐를 놓고 酒樽床 위에는 降神蓋盤、撤酒器、酒注、酒瓶이 놓이고 香卓앞이 拜席이며 北面中央에 神位인데 考西妣東이다。祭床南端이 五行으로 實果 四行이 菜、三行이 湯、二行이 炙、一行이 飯羹이다。四行兩端에 左肺右醢、二行兩端에는 左麵右餅 一行에는 左端으로부터 匙飭飯羹羹이 되고 合設時에는 匙飭飯羹羹飯羹羹이 된다。肺에는 紋魚乾明太 煎肉等이 있고 炙은 魚炙肉炙雉炙이 있는데 雉炙은 鷄炙으로 代用한다。그리고 湯은 魚湯、肉湯、菜湯이 있는데 祭需는 살림 餼饌과 그때 그때 事情에 따를 것이지 數量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祭需의 가지 수 보다는 故人을 그리는 精誠이 담겨 있어야 한다。

21, 進饌式(진찬식)

먼저 實果를 東西栗次 梨柿의 順序로 다음 조과(造果)를 앞출 右使(東)에 다음에는 肺醢 그 다음이 菜蔬를 네째 줄에, 다음에는 첫째 줄에 羹盤을 놓고 둘째 줄에 魚肉을, 그 다음에는 麵餅을 左右에, 그리고 飯羹과 匙飭를 첫째 줄에, 그리고 셋째 줄에 湯을 놓는다. 그 原文은 이렇다。

先進實果次進造次進肺醢次進菜蔬次進羹盤次進魚肉次進麵餅次進飯羹次進匙標次進湯三獻時各進一炙

22, 排饌式(배찬식, 排印安置列也漢書云相推排成列)

排饌은 陳設하는 祭需配置를 일컫는데 「百禮祝輯」에 보면 菓栗在西柿梨在東魚東肉西生東熟西」(四禮便覽終)

五、祝文에 對한 解說

喪禮와 祭禮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祝文과 告辭를 併에 있어서 各各 달리 써야 될 文句等을 여기에 따로 뽑아 모아서 說明하기로 한다。

太 歲(태세)

제사 지내는 해의 干支

朔 日(삭일)

제사 지내는 달의 초하루날 日辰

日 辰(일진)

제사 날의 干支

이는 六十甲子에 따른 것이므로 查력을 보면 알 수 있다。

某 官(모관)

男子의 境遇官職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官名을 쓰고 없으면 學生이라 고 쓴다。

某 公(모공)

男子의 境遇 他人이 말할 때는 某(姓)公이라 쓰고 子孫이 직접 祭祀를 지낼 때는 府君이라 쓰며 年少者에게는 이름 쓰지 않는다。

某 封(모봉)

女子의 境遇 옛날에는 男便이 官職에 오르면 따라서 그의 妻도 品階를 얻어 呼稱했으나 그것이 없으면 孺人이라 쓴다.

某 氏(모씨)

여자의 경우는 본관과 성을 쓴다.

奉祀者寸稱(봉사자촌칭)

제사 지내는 子孫의 寸稱인데 初喪을 當하고 大祥前에는 父喪에는 孤子 母喪에는 哀子 父母가 모두 안제실때는 고애자(孤哀子)라 쓰며 祖父의 喪事에는 孤孫, 祖母喪에는 哀孫, 祖父母가 모두 안제실때는 고애손(孤哀孫)이라 쓰고 卒哭以後에는 父母의 祭祀에는 孝子 祖父母의 祭祀에는 孝孫, 曾祖 父母의 祭祀에는 孝曾孫, 高祖父母의 祭祀에는 孝玄孫 男便의 祭祀에는 (某氏) 아내의 제사에는 夫라 쓴다.

祭 位(제위)

祭祀를 받으신 當者에게 奉祀者와의 寸數에 依하여 各各 달리 쓰는 것이다. 父親은 顯考 母親은 顯妣, 祖父는 顯祖考 祖母는 顯祖妣 曾祖父는 顯曾祖考 曾祖母는 顯曾祖妣, 高祖父는 顯高祖考, 高祖母는 顯高祖妣, 男便은 顯辟, 妻는 亡室 또는 故室이라 쓴다. 顯字는 故人을 높이는 뜻이다.

告祀者姓名(고사자성명)

山所에서 土地神에게 告祀 地境 境遇 直接 祭主가 아니고 餘他人이 地境 境遇에는 幼學某라 그 사람의 姓名을 쓰고 直接 祭主가 祭位에게 告祀 地境 境遇에는 祭主의 이름을 쓴다.

奉祀者名(봉사자명)

祭祀를 지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되 弟以下에게는 쓰지 않는다.

敢昭告于(감소고우)

妻의 祭에는 敢字를 削除하고 昭告于라 하며 弟以下에게는 告于라 쓴다. 「敢昭告于」라는 말은 「감히 밝히 아뢰옵건대」하는 말이다.

哀慕不寧(애모불녕)

妻에게는 悲悼酸告 不自勝堪. 兄에게는 悲痛無已 至情如何, 弟에게는 悲痛假至 情何可處, 子에게는 悲念相續 心焉如燬라 쓴다. (假는 愛也)

謹以(근이)

妻와 弟 以下에게. 茲以라 쓴다.

酒果用伸虔告(주과용신건고)

弟 以下에게는 酒果 用告 厥由라 쓴다.

昊天罔極(호천망극)

父母에게는 昊天罔極、祖父母 以上에게는 不勝永慕、男便에게는 不勝感
愴 弟以下에게는 不自勝感이라 쓴다.

伏惟(복유)

妻와 弟以下에게는 쓰지 않는다.

尊靈(존령)

妻와 弟以下에게는 惟靈이라 쓴다.

哀薦祇薦(애천지천)

妻와 弟以下에게는 陳此、伯叔父母에게는 薦此라 쓴다.

饗(향)

높이 받드는 文字이니 饗를 바꾸어 願字와 함께 높이 쓴다.

六、祝文書式

忌 祭(기제)

祝은 다음과 같다.

節 祀(절사)

八月추석이나 正月 설날같은 歲一祭인 절사에는 祝을 읽지 않고 單酌으로
初獻만을 올린다. 그 밖의 節次는 忌祭와 같다.

墓 祭(묘제)

墓祭의 陳設과 次例는 忌祭에 準하지만 參神을 먼저하고 降神은 後에
한다.

出主告辭(출주고사)

(祠堂에서 神主를 모셔 나올때 읽는 祝) 금이
今以

현고모관부군 원위지친 감청 신주출위 정침
願考某官府 遠諱之辰 敢請 神主出就 正寢

譯解..오늘이 돌아가신 날이옵니다. 神主께서 正寢으로 나아가 가시기
를 감히 바랍니다.

忌祭祝(기제축) (조부모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호손모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孝孫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고관 부군
願祖考某官府君

현조비모봉 모씨 세서천역
願祖妣某封某氏 歲序遷易

현조고 혹은조비 위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청작시
顯祖考(或云祖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清酌庶

수 공신전현상
羞 恭伸奠獻 尚

饗

參考..曾祖 高祖의 祭祀 때에도 祝文은 예와같은 書式으로 쓰되
만 祭位와 奉祀者稱號만이 各各 寸數에 따라 달리 쓰이게 된다.

譯解..年月日 孝孫某는 敢히 告하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해가 바뀌어서

할아버님 돌아가신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永遠도록 思慕하는 마음
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飲食으로 公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肅穆 하여주소서

忌祭祝(기제축) (부모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효자모
維歲次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孝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
顯考某官府君

현비모봉모씨 세서천역
顯妣某封某氏 歲序遷易

현고(혹은비) 위일부림 추원감시 호전망극 근이 청작서수
顯考(或云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清酌庶羞

공신전현상
恭伸奠獻 尚

饗

譯解...昊天罔極은 해가 하늘과 같이 크고 넓어서 헤아릴수 없습
니다. (其他는 祖父母의 祝 參照)

忌祭祝(기제축) (남편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주부모봉모씨
維歲次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主婦某封某氏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비모관부군 세서천역 위일부림 추원감시 불승감창 근이 청작서수 공신
顯妣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謹以 清酌庶羞 恭伸

전현상
奠獻 尚

饗

譯解..(前略)..해가 바뀌어 府君의 돌아가신 날을 맞으니 때에 따
라 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하겠아옵니다 여기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영혼 앞에 공손히 올리오니 肅穆 하여주소서
不勝感愴..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함(其他는 祖父母祝文參照)

忌祭祝(기제축) (아내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부모 소고우
維歲次干支某月 干支朔某日 干支夫某(姓名) 昭告于

망신모봉모씨 세서천역 망일부지 비도산고 부자증감자이 청작서수 신차
亡室某封某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悲悼酸苦 不自勝堪 效以 清酌庶羞 伸此

전의상
奠儀 尚

喪

譯解…亡日復至…죽은 날이 돌아옴

忌祭祝(기제축) …(형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제모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弟某(弟名) 敢昭告于

顯兄學生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悲痛無已 至情如何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현 상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

喪

譯解…(前略)…歲月이 흘러서 兄님 祭祀날을 다시 맞으니 그리운
정과 비통한 마음 한량 없습니다. 이제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안주
를 차려 공손히 올리오니 운감 하시기 바랍니다.

忌祭祝(기제축) …(아우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형 고우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兄 告于

망제모 세서천역 망일부지 비통외지 정하가처
亡弟某(弟名) 歲序遷易 亡日復至 悲痛俱至 情何可處

자이 청작 전차전의 상
茲以 清酌 陳此奠儀 尙

喪

譯解…(前略)…歲月이 흘러서 아우의 亡日이 다시 돌아오니 그리운

마음 어찌 할 바를 모르겠오 이제 맑은 술을 차려 놓았으니 운감하
여주시 바라오

忌祭祝(기제축) …(아들의 경우)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부 고우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父 告于

망자모 세서천역 망일부지 비통상속 심연여제 자이
亡子某(子名) 歲序遷易 亡日復至 悲念相續 心焉如燬 茲以

청작 전차전의 상 향
清酌 陳此奠儀 尙 喪

(譯解…(前略)…너의 祭祀날을 다시 당하게 되니 아버지의 마음은 불
타는 것 같고 비통한 마음 한량없어 이에 맑은 술을 차렸으니 운감
하기 바랍니다.)

墓祭祝(묘제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 대손모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代祖考 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既降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 清

酌庶羞 祗薦歲事 尙

喪

參考…『霜露既降』을 歲時에는 『歲律既更』 端午에는 『時物暢茂』 秋祭
에라 『白露既降』 十月에는 『履茲霜露』 이라 쓴다.

譯解…(前略)年月日 몇代孫 某는 몇代 할아버님 墓所에 敢히 告하
읍니다. 節候가 바뀌어 이미 서리(霜)가 내렸아 움기에 封墳을 바라
보고 그리워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 하겠읍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飲食으로 歲事로 올리오니 肅穆하여 주옵소서.

墓祭時 土地祝(묘제시 토지축) …(산신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모 감소고우 토지지신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
爲(主祭者姓名) 恭修歲事于 顯○○代祖考(祭位考妣) 某官府君之墓 維時保
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尙 饗

譯解…(前略)土地 神에게 敢히 告하읍니다. ○代祖의 墓所에 삼
가 歲事를 올리는바 때로 도우사 神의 保佑에 힘입고져 여기 술과
안주로 제사를 드리오니 肅穆하옵소서.

墓改莎草祝(묘개사) …(사초할때 고하는 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모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 고모판부군지묘 세월자구 초희토미 금이질신 익봉개사복유 존명 불진
顯 考某官府君之墓 歲月枝久 草衰土圯 今以吉辰 益封改莎伏惟 尊靈 不震
不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參考…(前略)歲月이 오래되어 풀도 없어지고 흙도 무너져서 이제 봉분을
더하고 메를 다시 입히려 하오니 존명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이에

酒果를 피우고 삼가 告하읍니다.

墓改莎草前土地祝(묘개사초전토지축) …(산신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모 감소고우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판부군 총택봉회 장가수치 신기보우 미무후간 근이 주과
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塚宅崩頽 將加修治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酒果
用伸 虔告謹祀

譯解…(前略)○○(某)의 무덤이 허물어지고 퇴락하여 이제 補修코
자 하오니 神은 保護하여 후에 근심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삼가 주과
로써 神에게 薦伸하오니 肅穆하옵소서.

墓改莎草後慰安祝(묘개사초후위안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日辰)모 감소고우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 고모판부군지묘 기봉기사 구택유신 복유 존명 영세시녕
顯 考某官府君之墓 既封既莎 舊宅維新 伏惟 尊靈 永世是寧
譯解…(前略)이미 봉분을 보수하고 새로잔디를 입혔으니 옛집이 새로워
졌읍니다. 존명은 새로 잔디를 입혔으니 편안히 누리옵소서.

具石物祝(구석물축) …(석물을 세울때)

유세차(太歲) (月建) (日辰)모 감소고우
維歲次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奉祀者)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복이 재력복희의물다달
顯考某官府君之墓 伏以財力不逮 儀物多闕 (三年喪內去八字)

금지유년근구 (모물) 용위묘도 복유 존명 시방시명
今至有年謹具 (某物) 用衛墓道 伏惟尊靈是憑是寧

參考 謹具 (某物) 碑誌·床石·望柱·人石等 갖춘 石物에 따라서

고쳐 쓴다. 用衛墓道 : 碑石에는 「用衛」를 고쳐서 「用表」라 하고誌

石에는 「略叙世系 埋于義門」이라고 고쳐 쓴다.

譯解 前略 : 前에 이곳 묘소에 모시고도 의물(儀物)을 고루하지

못 하였더니 이제 와서 삼가 石物을 갖추고 墓道를 호위하오니 존

령께서는 여기의 依持하여 平安하옵시건 바라옵니다.

具石物時土地祝(구석물시토지축) .. (산신축)

유세차(太歲) (朔日辰) 모
維歲次干支 某月干支 朔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묘의미구 자장모물 용위신도 신기보우
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墓儀未久 茲將某物 用衛神道 神其保佑 俾無後艱

근이 주와용신 전고근고
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參考 祝은 碑石을 세운 뒤에 산신에게 고하는 祝이다.

譯解 前略 : 前에 묘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니 이제 묘석을 세워서

神의 道를 호위하오니 神은 도우시어서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 삼가

酒果를 차려놓고 正성것 고하옵니다.

改葬土地祝(개정토지축) .. (改葬할때 山神에게
告하는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모
維歲次干支 某月干支 朔某日干支 某(奉祀者姓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택조불리 장개정우차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 청
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

작포해 지천우신상
酌脯醢 祗薦于神 尚

響향

譯解 前略 : (某)는 土地神에게 고하옵니다. 이제 (某)의 무덤이

불리하여 여기에 개정 하겠오니 神은 보호하시고 후환이 없게

하소서. 이에 삼가 주과. 포해로서 薦伸하오니 흠향 하옵소서.

改葬後奠墓祝(개정후전묘축) .. (改葬後墓에
告하는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모
維歲次干支 某月干支 朔某日干支 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모관부군지묘 신개유택 사원봉영 복유 존명 영안제백
顯某官府君之墓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尊靈 永安體魄

譯解 前略 (某)의 묘를 새로 마련하는 일을 끝마치고 존령에게
없드려 바라옵건대 영원히 체백이 平安하옵소서.

失墓追尋祝(실묘추심축) .. (잃어버렸던 墓를 찾기 위
하여 古墳에 告하는祝)

유세차(太歲) (朔日辰) 내손모
維歲次干支 某月干支 朔某日干支 ○代孫某(告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기대조모관) 부군지표 구신기처 고래상전 재어 모지 기무비표 막가지
願(幾代祖某官) 府君之墓 久失其處 古來相傳 在於(某地) 其無碑表 莫可指

摘 或冀 有墳之誌 可以考證者 不取不略 謹啓 塋域 伏願 不震不驚

譯解..(前略)(某)는 古塚의 神에게 告하나다. 幾代(○代祖) 할아

버지의 墓가 있는 곳을 오래 잃고 있던 바 옛부터 전해 오기를 (아

무곳)에 있다고 하나 碑도 表石도 없어서 確實히 指摘할 수 없으므

로 혹 이속에 지석(誌石)이 있으면 可히 考證함유기에 이 塋域을

열고 살펴보고자 하오니 놀라시지 마시옵소서.

杖菴는 지팡이 짚고 一年服
不杖菴는 지팡이 없이 一年服
當自己爲後養子斬衰三年
凡男爲人後者爲所後黨服一如正服

[illegible]

外 黨 妻 黨 服 之 圖

(家 妻)

(家 外)

嫡母之父母兄弟姊妹亡 嫡母死則不服		外祖父母 五月		母出則繼母의 父母兄弟姊妹小功五月	
		姨母 五月		外叔父 五月 外叔母(國制總)	
姨從兄弟姊妹 三月		姑從兄弟姊妹 三月		自 己 三月	
甥姪女 五月		婿 三月		甥姪婦 五月 三月	
外親亡 雖適人不降爲人後者本生出外祖父母總麻(三月)		外孫子女 媳 婦同 三月		子息亡 嫡母의 父母兄弟는 모두 小功(五月) 妻의 親母는 他에 改嫁하여 有服	

妻爲夫黨服之圖

(家 媳)

夫의 外祖父母와 姨母와 外叔은 總麻三月

凡婦服夫黨喪而出則除之

		媳高祖母 三月		媳高祖父 三月	
		媳曾祖母 三月		媳曾祖父 三月	
		媳王姑母 三月	媳祖母 九月	媳祖父 九月	媳從祖父母 三月
		媳從姑母 國制三月	媳姑母 五月	媳齊衰三年	媳伯叔父母 九月
		適人不降	適人不降	自 己	夫從兄弟 國制三月
		夫從姊妹 三月	夫姊妹 五月	夫 夫	夫從兄弟 國制三月
		適人不降	適人不降	自 己	夫從兄弟 國制三月
再從姪女 三月	從姪女 五月	嫁九月	姪女 一年	子 長一年	婦 長三年
衆無	衆無	衆無	衆無	衆無	衆無
再從孫女 三月	從孫女 三月	嫁三月	從孫女 三月	孫 長五月	婦 長一年
衆無	衆無	衆無	衆無	衆無	衆無
從曾孫女 三月	從曾孫女 三月	嫁三月	從曾孫女 三月	曾孫 長五月	婦 長一年
衆無	衆無	衆無	衆無	衆無	衆無
玄孫 長五月	玄孫 長五月	衆無	玄孫 長五月	衆無	衆無

夫의 祖、曾高祖父母의 承重服을 입을때나 養子가 養父母服을 입을때는 男便을 따라 같이 입는다. 但、媳母가 살았으면 本服만 입는다.

女息은 不杖葬 出嫁면 九月 大功

圖 之 服 庭 親 女 嫁 出

凡女適人者爲其私親皆降一等惟於祖曾高祖父母及兄弟之爲人後者及兄弟姪之妻皆從本服

姑姊妹女孫女嫁友者服與男子同適人而無夫與子者亦同與適人而夫與子者爲其兄弟姊妹及兄弟之子皆不杖莽

		高祖父母 齊衰三月					
		曾祖父母 齊衰五月					
		從祖王姑母 三月	祖父母 不杖莽	從祖父母 三月			
		從姑母 三月	姑母 九月	父 不杖莽	伯叔父母 九月	從叔父母 三月	
再從姊妹 三月	從姊妹 五月	姊妹 九月	自己	妻 五月	男兄弟 九月	男從兄弟 五月	再從男 三月
		姨 五月	婦無	婦 三月	姪 九月	從 三月	妻無
				從 三月	婦無	孫 三月	

姑姊妹女孫女嫁友者服與男子同適人而無夫與子者亦同與

兄弟之婦人後者及兄弟之妻皆從本服

養女各出不再降

養女各出不再降

